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집 개정을 축하하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2005년 처음으로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많은 찬반 의견이 있었으나 그 당시 이미 9개 세부분과에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수련교육 병원의 교육자들이 세부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진료를 하고 있거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큰 무리없이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세부전문의를 양성하여 진료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발족된 지 벌써 5년이 지나 2011년 3월에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세부전문의제도 운영 학회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한소아과학회 9개 세부전문 분야의 전문의들도 자격증을 갱신하는 시기에 이르러 소아알레르기호흡기 분야에서 2011년 3월에 제일 먼저 자격증 갱신을 받았습니다.

세부전문의제도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발생한 다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2007년 11월에 발간된 규정집을 근간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전문제도를 운영하면서 좀 더 명확한 문구와 실질적인 지침이 필요하게 되어 규정집을 개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아과의 진료과목명이 소아청소년과로 바뀌어 모든 세부 분야의 명칭도 소아과 대신 소아청소년과로 개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소아과학회의 모범을 근간으로 하여 각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집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5년 전 세부전문의제도 도입 당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신 김창휘 전 이사장님과 개정집 발간에 총력을 기울인 세부전문의관리이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번에 개정되는 규정집을 통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각 분과학회에서의 세부전문의제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 **이준성**

세부전문의제도 규정집 개정 배경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2005년 6월15일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첫 규정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전문의제도는 소아과학의 세부전문 분야의 진료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여 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을 향상시켜 학문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소아과학회는 세부전문 분야로 나뉘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었고, 교육병원에 근무하는 교육지도자들도 대부분 세부분야로 나뉘어 진료,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과학 세부전문분야의 학지식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신 의학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양질의 전문적 진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미 2001년 12월11일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가 만들어져 각 학회별로 전문 분야에 따라 28개 분과 학회에 설립되어 있던 세부전문의 관련 업무를 조정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의학회가 제시한 세부전문의제도의 기본 원칙은 전문 진료과목으로 표방하지 않고, 타 전공 분야의 의료행위 제반이나 업무를 독점하지 않고, 경제적 수익 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 유치의 수단, 의료 수가의 반영 등)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 분과학회의 위상 강화 및 세 확장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대한소아과학회도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11월 처음으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관리 규정집이 발간되었고 이 규정집에 따라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좀 더 구체화할 문제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각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제도 운영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집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혹시 규정집만으로 미흡할 경우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규정집 발간에 공로가 많으신 전 세부전문의관리이사 이종국 교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세부전문의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집 발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3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관리이사 **박재욱**

목 차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7
2.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41
3.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87
4.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분과.....	145
5.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187
6. 신생아 분과.....	237
7. 소아청소년 신장 분과.....	281
8. 소아청소년 심장 분과.....	321
9.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357
10.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분과.....	403
11. 별지 서식 목록.....	431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2005. 6. 15 제정

2006. 3. 8 개정

2007. 2. 8 개정

2011. 3. 1 개정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2.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

1. 2005. 6.15 :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확정하여 시행
2. 2006. 3. 8 :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경과규정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중 제5조(교육기관) 수정(3차 회의록 참조)
3. 2007. 2. 8 :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제5조(조직) 수정(4차 회의록 참조)
4. 2010. 11. 8 :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전면 개편 수정 시작
(2010년 2차, 3차, 4차, 5차, 2011년 1차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 회의록 및 변경 대비표 참조)
5. 2011. 3. 1 :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수정안이 의학회 승인 후 시행됨

2.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체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 분과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 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분과

대한소아과학회는 다음 각 항의 소아청소년과 분과 전문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 ① 소아청소년 감염
- ② 소아청소년 내분비
- ③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 ④ 소아청소년 신경
- ⑤ 신생아
- ⑥ 소아청소년 신장
- ⑦ 소아청소년 심장
- ⑧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 ⑨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제5조] 조직

-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학회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교육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와 9개 각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교육, 학술, 고시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각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⑤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각 분과학회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

- ①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 하고 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

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시험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

- ①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보칙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분과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각 분과 학회는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대한소아과학회
- ② 각 분과 학회
- ③ 각 분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각 분과 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 ② 각 분과 학회 별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하며,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

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교육 결과 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분과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각 분과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 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를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의 각 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 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분과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를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 당일 분과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분과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행위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8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이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학회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교육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와 9개 각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교육, 학술, 고시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각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④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회의

-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재정

-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분과학회는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6조] 행정요원

-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행정요원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2011.2.8)

1.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이 추가되어 일련 번호 수정됨 (이하 모두 적용)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소아과 명칭은 모두 소아청소년과 로 변경(학회명 제외)
2	제 2 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세부전문의 취득 후 1차진료 개원의로 근무하는 분과가 있음
4	제 4조 (분과) 대한소아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9개 소아과 분과 전문 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1. 소아감염 분과 2. 소아내분비 분과	[제4조] 분과 대한소아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9개 소아청소년과 분과 전문 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1. 소아청소년 감염 2. 소아청소년 내분비 3.~9. 이하 분과 모두 소아를 소아청소년으로 변경	분과명칭 표시에서도 소아를 소아청소년으로 변경
5	제 5 조 (조직)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학회 총무이사 부위원장이 되며, 교육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 와 9개 각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세부	[제5조] 조직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학회 총무이사 부위원장이 되며, 교육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 와 9개 각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위원의 임기는 각 분과 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의 임기에 따르므로 별도 표시 하지 않음, 통상 2년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교육, 학술, 고시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각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제 6 조 (학술 및 연수교육)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각 분과 학회는 연수 강좌 및 실습 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관련학회는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학술 및 연수교육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각 분과 학회는 연수 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연간 10평점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학술대회를 포함 10평점으로 확대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해야함을 규정
7	제 7 조 (수련) 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 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임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학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 ①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임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최소 수련기간 규정 군대 및 공중보건의 전역자에 관한 조항 추가. 교육지도자 부재시 수련지침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p>제 8 조 (수련병원)</p> <p>① 수련 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 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 하고 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 관리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p>	<p>[제8조] 수련병원</p> <p>① 수련 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 하고 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관리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p> <p>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수련병원의 인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p>
9	<p>제 9 조 (자격인정)</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p> <p>ㄱ.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p> <p>ㄴ.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제9조] 자격인정</p> <p>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자격인정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한 최소 수련기간을 1년으로, 최소 취득평점을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추가 여부는 분과학회에서 결정함</p> <p>평점취득의 의무사항 및 첫 1년간 평점을 이수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 보강</p> <p>해외 수련시 자격인정 규정을 추가</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9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보칙		[제12조] 보칙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관련학과 전문의의 세부전문의 응시 규정을 보칙으로 신설추가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은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

2. 소아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소아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3.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4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한다. ② 각 분과학회는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각 분과학회는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술대회를 포함
6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 학회와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각 분과 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각 분과 학회 별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각 분과 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각 분과 학회 별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하며,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수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하는 규정
7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지에 공고하며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별 종합 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한다.	계획서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설되어 시행 예정 혹은 시행한 연수강좌에 대한 인정 조항 추가
9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호 서식연수교육이수자 명부 삭제함
10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분과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 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1	<p>제11조 (평점)</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p> <p>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또는 등록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③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제 1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평점을 가산한다.</p> <p>④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게 2평점을 가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⑤ 교육회기 동안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한 평점을 학회에서 주관하는 10평점을 포함하여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제11조] 평점</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p> <p>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각 분과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다.</p> <p>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p> <p>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평점의무는 삭제하여 1.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총칙 제9조 자격인정 항목으로 이동함)</p>	<p>학술대회 평점인정 기준에서 분과 학회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함</p> <p>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의 범위 확대</p> <p>연수교육 강의는 평점에서 제외함</p> <p>제1저자의 평점부여를 상향 조정함</p>
보칙	<p>[제13조] 보칙</p> <p>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3조] 보칙</p> <p>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p>	<p>이하 각 규정마다 보칙을 수정함</p>

3.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4.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2	<p>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p>[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 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전임의 수련병원의 자격이 생성되므로 전임의 수련병원을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수정함
	<p>제 3조 (수련) 소아과전문의로서 소아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4	<p>제 4조 (수련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p>[제4조] 수련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최소 수련기간 규정</p> <p>군전역자를 위한 수련기간 명시</p> <p>교육지도자 부재시의 수련인정 기준 추가</p> <p>별지서식 번호 수정</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8		<p>[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① 각 수련병원의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p>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의무를 각 수련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 변경함 (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
9		<p>[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p> <p>① 각 수련병원 해당 분과의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p>② 각 수련병원 해당 분과의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의무를 각 수련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 변경함 (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
11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과책임자는 학회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학회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의 ②항으로 이동하여 자세히 기술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2	<p>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p>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수련병원 인정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함</p> <p>수련병원의 신청의무를 각 수련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 변경함(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p>
14	<p>제 14조 (수련병원의 심사)</p> <p>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4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p> <p>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수련병원 자격심사 및 갱신으로 수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는다.</p> <p>각 분과위원회는 5년마다 각 수련병원 별로 시설 및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아과 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 교부 받아야 한다.</p>

4. 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5.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 및 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2	<p>제 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로 한다.</p>	<p>[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현행 규정 중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조항을 삭제함</p> <p>2006년 이전에 전임의를 이수한 자로서 이후 한시적 경과규정으로 시행된 서류심사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전임의 이수자 중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지 않은 자는 세부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평점의무를 이동하여 응시자격에 추가함</p> <p>해외수련 전임의의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 추가</p>
3	<p>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①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과목으로 한다.</p> <p>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p>	<p>[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①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과목으로 한다.</p> <p>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p> <p>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p> <p>④ 1차 시험 당일 분과 자체 인정 후 2</p>	<p>제 4조 수험절차 조항은 삭제하고 제4조 내용을 3조 4항으로 이관</p> <p>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함(분과 자체 인정 후 당일 2차 시험 진행 가능함)</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제 7조 (시험위원회 선출) ① 분과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 6조 (시험위원회 선출) ① 분과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선택위원 추가
8	제 8조 (시험문제 및 배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3조에 통합
11	제 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① 학회 이사장은 부정행위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① 학회 이사장은 부정행위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변동 없음 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한 처리규정 - 관리규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시험시작 시간 이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을 시험공고 안내와 수험표 하단에 명확히 기재하고, 지각한 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추가신설

5. 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6.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2	<p>제 2조 (자격)</p> <p>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 자격</p> <p>①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p> <p>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p> <p>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
3	<p>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p> <p>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p>	<p>[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p> <p>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갱신시 수수료 징수 항목 추가
4	<p>제 4조 (서류제출)</p> <p>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p>[제4조] 서류제출</p> <p>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갱신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강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 규정 추가갱신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p>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p>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에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p> <p>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p>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p>	<p>①항에 세부사항 추가</p>
7	<p>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p>	<p>①항에 세부사항 추가</p>

6.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7.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2	<p>제 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시 기능 추가
2	<p>제 3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p>[제3조] 조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학회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교육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와 9개 각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교육, 학술, 고시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각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직에 대해 자세히 기술



2.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2006. 2. 제정

2011. 3. 1 개정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8.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내용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제도는 소아감염학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소아감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은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1. 학문적 측면

- 의학지식의 급격한 팽창
- 소아감염학의 급속한 발전
- 의학의 세분화, 초 세분화 경향에 대한 자연적 반응

2. 의료 기술적 측면

- 새로운 백신의 개발 및 도입
- 소아감염 영역에서 신지식 습득 필요성 증대
- 항생제 내성균의 급증과 새로운 항생제의 사용
- 진료용 첨단 의료 기기의 개발과 발전

3. 질병양상의 변화

-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감염병의 발현
- 기회 감염의 증가
- 육아양상 변화 등에 의한 감염병의 역학 변화
- 항생제 내성균의 급증

4. 국민의 의료욕구 추이의 변화

- 복지 건강 사회의 지향
-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 욕구 증가

5. 현실적 측면

- 교육 병원에 근무하는 교육 지도자의 대다수가 세부전공과목 해당 업무를 수행
- 대한소아과학회의 학술 활동도 세부전공과목별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

2.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 분과인 소아감염학 분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이거나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와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감염학 분야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 등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을 5명 이상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2. 분과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연수 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1년에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별표 1).

[제6조] 수련

1.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지정한

-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감염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 해 2월 까지로 한다.
 4.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감염학 교육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 1 혹은 2항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 2)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동안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수련 교육회기 동안 ‘소아감염’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별표2).
2.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3.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험

1.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분과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한국소아감염병학회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1. 분과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하며,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가 포함된다(별표 1).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한다.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1일당 3평점을 부여하며,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는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의 경우는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시간당 1점의 평점이 부여되나, 관련학회 또는 인정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학술대회에 준한다.
-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ion),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또는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별표 2)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3).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

리위원회"라 한다)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감염학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감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 4).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1.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2.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1.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
 -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
 -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연도 수련 이수자 명부
 -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2.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1.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2.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5).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분과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 1 혹은 2항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동안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수련 교육회기 동안 ‘소아감염’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
2.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3.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 감염병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4.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향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이라 한다) 위원장과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이하 “분과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증명서
4.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5.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6.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7.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8.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9.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1. 분과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 (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 제출하며,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분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분과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 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1. 분과 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장이 관리위원을 5명 이상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제4조] 회의

1. 분과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분과 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분과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거부동수인 경우에는 분과 관리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소위원회

1. 분과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분과 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분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 2항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감염학회	국내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대한면역저하환자 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감염에 관련된 기타 학회
	국외	미국소아과학회 ICAAC APS-SPR European SPR FASEB ESPID WSPID Asian-SPR ASPID CDC(workshop 포함) WHO(workshop 포함) IDSA WCC ICC ICID ISAAR 전세계 및 지역별 감염과 관련된 학회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8조 제 1항 관련)

분과	학술지
소아청소년 감염	소아과 소아감염 감염과 화학요법 대한의사협회지 SCI 등재 학술지 SCI extension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 감염	교육지도자수 + 1

<별표 4> 수련 내용: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 2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중 연간 10평점 이상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학술지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감염 관련 논문(증례보고 및 종설은 제외)을 게재
수련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100 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50 명 이상 (3) 타분과를 포함한 타과와의 진료상담 30 건 이상
교육내용	1. 소아감염 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① 중요 임상 증후군 ② 예방 접종 ③ 감염 관리 ④ 세균 감염 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⑥ 클라미디아 감염 ⑦ 바이러스 감염 ⑧ 진균 감염 ⑨ 리케차 감염 ⑩ 기생충 감염 ⑪ 항생제 요법 2.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 진료 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4. 인성교육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1조 4항 관련)

분과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 감염	1. 교육지도자수 : 1 명 이상 2. 병상 수 : 400 병상 이상* 3. 진료시설 : 소아집중치료실 시설 및 장비 인공호흡기 pulse oxymetry EKG monitoring BP monitoring 4. 관련 타과유무 : 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 단, 대학병원은 병상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조항	현행	개정	비고
표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안)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분과 표시명칭 변경, 규칙을 규정으로 통일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4.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5.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6.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분과 표시명칭 변경, 규칙을 규정으로 통일
제목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분과 표시명칭 변경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제도는 소아감염학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소아감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은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제도는 소아감염학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소아감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은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분과 표시명칭 변경

2.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2.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이하“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이하“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과 표시명칭 변경
2	제 2 조 (정의) 세부전문의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 분과인 소아감염학 분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이거나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와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2차 진료와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 분과인 소아감염학 분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이거나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와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세부전문의의 취득 후 1차진료 개원의로 근무하는 분과가 있음
4	제 4 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을 5명 이상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2. 분과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이하 “분과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을 5명 이상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2. 분과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을 명시함. 논의필요
5	제 5 조 (학술 및 연수교육)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을 1년에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1년에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	학술대회를 포함 10평점으로 확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인정하는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로 한다.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 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6	제 6 조 (수련) 1.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감염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3.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 1.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감염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 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4.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군대 및 공중보건의 전역자에 관한 조항 추가. 별지서식 번호 변경
7	제 7 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감염학 교육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병원 지정	[제7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감염학 교육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병원 지정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다시 환원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정을 추천하고, 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정을 추천하고, 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4.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수련병원의 인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8	<p>제 8조 (자격인정)</p> <p>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수험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인정료를 징수한다.</p> <p>1)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p> <p>2)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거나, 1년 이상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3) 소아감염지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하며, 감염관련 학회지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한 자</p> <p>2. 자격 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표 6)</p> <p>3. 단,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분과관리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만으로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인정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p>	<p>[제8조] 자격인정</p> <p>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 1 혹은 2항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p> <p>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시험 신청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2)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동안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3) 수련 교육회기 동안 ‘소아감염’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p> <p>2.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입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수련기간을 최소 요건 1년+ @로 규정하여, 공통적인 응시자격을 위한 최소 취득 평점은 1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여부는 분과학회에서 결정함</p> <p>해외 수련시 자격인정 규정을 추가</p> <p>평점취득의 의무 사항을 이동함 첫 1년간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 보강 신설함</p>
8		3.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	<p>1. 이 규정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p> <p>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3.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p>	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부칙		<p>시 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p>	

3.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3.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1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감염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감염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분과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분과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4	제 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제 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1.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소아감염병학회와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1.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별표 1). 1)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2. 한국소아감염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하며,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가 포함된다.	연수인정 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를 반드시 포함
7	제 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관리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 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소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설되어 시행 예정 혹은 시행한 연수강좌에 대한 인정조항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아과학회지에 공고하며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9	제 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회기 말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교육 결과보고서를(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삭제)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호 서식연수교육이수자 명부삭제함
10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한국소아감염병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11	제11조 (평점) 1.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2.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등록영수증 또는 초록집에 편집된 초록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3.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제 1발표자와 책임 저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 평점을 가산한다. 4.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감염관련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게 2평점을 가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5. 교육회기 동안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한 평점을 학회에서 주관하는 10평점을 포함하여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평점 1.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2.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한다.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1일당 3평점을 부여하며,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는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의 경우는 한국소아감염병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시간당 1점의 평점이 부여되나, 관련학회 또는 인정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학술대회에 준한다. 3.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 cate),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또는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4.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5.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학술대회 평점인정기준에 대한 재논의 결과 분과학회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함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의 범위 확대 연수교육 강의는 평점에서 제외함 전임의 평정의무를 규정1 제9조 자격인정 조항으로 이동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1		<p>6.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⑦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제)</p>	
부칙	이 규정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	<p>1. 이 규정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p> <p>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4.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4. 소아청소년과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1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감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 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 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전임의 수련병원의 자격이 생성되므로 전임의 수련병원을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수정함
3	제 3조 (수련)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감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 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4	제 4조 (수련기간) 1. 수련 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로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해야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	군전역자를 위한 수련기간 명시 교육지도자 부재 시의 수련인정기간 규정 추가 별지서식 번호 수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p>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6	<p>제 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1.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감염학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감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2. 수련내용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표 4).</p>	<p>[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감염학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감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2. 수련내용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표 4).</p>	
8	<p>제 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1.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p> <p>2)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p> <p>3)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p> <p>2.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1.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p> <p>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p> <p>3)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p> <p>2.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의무를 각 수련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 변경함 (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
9	<p>제 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p> <p>1. 수련병원의 소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p> <p>2)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p> <p>3)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연도 수련 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교육지도자 명부</p> <p>2.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후 보고 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p>	<p>[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p> <p>1.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p> <p>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p> <p>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연도 수련 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교육지도자 명부</p> <p>2.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 된 사항</p>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의무를 각 수련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 변경함 (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9	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12	<p>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과책임자는 학회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학회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과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 5).</p>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 대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대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5).</p>	<p>수련병원의 신규 지정으로 수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새롭게 전임의 교육을 시작하려고 계획하는 경우(매해 3월부터 전임의 교육회기가 시작됨), 미리 신규 수련병원 신청을 하여 교육회기 시작전 2월까지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전임의 수련 인정을 받을 수 있다.</p> <p>수련병원의 신청 의무를 각 수련 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 변경함(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 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p>
13	제 13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14	제 14조 (수련병원의 심사)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	[제14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p>수련병원 자격심사 및 갱신으로 수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 수련</p>

	<p>할 수 있다.</p>	<p>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각 분과위원회는 각 수련병원 별로 5년마다 시설 및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소아과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아과 학회 이사장으로 부터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 교부 받아야 한다. 주) 교육지도자 부재시에도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전임의 교육이 가능하므로, 수련병원 자격유지가 가능한 최대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부재기간이 최대 1년이하인 경우에만 인정)</p>
15	<p>제 15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p>	<p>[제15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p>	
	<p>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과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끝난 수련을 인정할 수 있다.</p>	<p>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과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끝난 수련을 인정할 수 있다.(삭제)</p>	

5.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5.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1	<p>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p>제 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로 한다.</p>	<p>[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 1 혹은 2항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동안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 교육회기 동안 ‘소아감염’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p>현행 규정 중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조항을 삭제함</p> <p>2006년 이전에 전임의를 이수한 자로서 이후 한시적 경과규정으로 시행된 서류심사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전임의 이수자 중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지 않은 자는 세부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4	<p>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p>제 4조 (수험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p>[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 감염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4.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p>제 4조 수험절차 조항은 삭제하고 4조 내용을 3조 4항으로 이관한다.</p> <p>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함(분과 자체 인정 후 진행) -> 당일 2차 시험 가능함</p>
6	<p>제 6조 (응시원서)</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 사본 4.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6.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과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7.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 8.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p>[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⑨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p>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p>
7	<p>제 7조 (시험위원회 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p>[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 	<p>문제 출제, 선택, 채점, 감독, 실기 시험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며, 선택위원과 감독위원</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은 중복이 가능하나, 감독위원과 채점위원은 겸임하여 선출할 수 없다.
8	제 8조 (시험문제 및 배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3조에 통합
10	제 10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11	제 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변동 없음 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한 처리규정 - 관리규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시험시작 시간이 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을 시험공고 안내와 수험표 하단에 명확히 기재하고, 시험시작 이후 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추가신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6.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1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감염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자격)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자격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 -해외체류의 성격을 규정할 것인지 토의필요(단순체류 혹은 해외연수)
3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갱신 교부 시 수수료 징수 항목 추가
4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 제출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p>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p> <p>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p>	
5	<p>제 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6	<p>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에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2. 2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p>[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2항에 세부사항 추가(152p 6조1항 참조)
7	<p>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p>[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2항으로 세부사항 추가 (153p 7조1항 참조)
	<p>부 칙</p> <p>1. 본 규칙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p>	<p>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p> <p>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7.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회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회 관리위원회 규정	7.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세부전문회 관리위원회 규정	
1	<p>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과 세부전문회(이하 “세부전문회”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5 조 제 5 항에 규정된 소아감염 세부전문회 분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회(이하 “세부전문회”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회 분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p>제 2 조 (기능) 분과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회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전문회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4.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분과 관리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조] 기능 분과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회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전문회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시 기능 추가
2	<p>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과 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장이 관리위원을 5명 이상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분과 관리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분과 간사는 분과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p>[제3조] 조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과 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장이 관리위원을 5명 이상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소아감염 세부 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관련)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 2항 관련)	
인정 학회	<p>대한소아과학회 한국소아감염병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미국소아과학회 ICAAC APS-SPR European SPR FASEB ESPID WSPID Asian-SPR ASPID CDC(workshop 포함) WHO(workshop 포함) IDSA WCC ICC ICID ISAAR</p>	<p>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감염학회</p>	
	<p>국내</p> <p>감염에 관련된 제반 학회</p>	<p>국내</p> <p>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대한면역저하자 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감염에 관련된 기타 학회</p>	
	<p>국외</p> <p>전세계 및 지역별 감염과 관련된 학회</p>	<p>국외</p> <p>미국소아과학회 ICAAC APS-SPR European SPR FASEB ESPID WSPID Asian-SPR ASPID CDC(workshop 포함) WHO(workshop 포함) IDSA WCC ICC</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국외		국외	ICID ISAAR 전세계 및 지역별 감염과 관련된 학회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소아감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련 규정 제 11조 제 6항 관계)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8조 제 1항 관련)		
	학술지		학술지		
	소아과 소아감염 감염과 화학요법 대한의사협회지 SCI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소아과 소아감염 감염과 화학요법 대한의사협회지 SCI 등재 학술지 SCI extension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4> 수련 내용:		<별표 4> 수련 내용:		
	수련 내용	기준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중 연간 15평점 이상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중 연간 10평점 이상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 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 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 항 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참조) 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감염 관련 논 문(증례보고 및 중설은 제외)을 게재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아청 소년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에 명 시된 학술지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감염 관련 논문(증례보고 및 중설은 제외)을 게재	
	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100 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50 명 이상 (3) 다분과를 포함한 다과와의 진료 상담 30 건 이상	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100 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50 명 이상 (3) 다분과를 포함한 다과와의 진료 상담 30 건 이상	
	교육내용	1. 소아감염 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 야 할 전문지식 ① 중요 임상 증후군 ② 예방 접종 ③ 감염 관리 ④ 세균 감염 ⑤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⑥ 클라미디아 감염 ⑦ 바이러스 감염	교육내용	1. 소아감염 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 야 할 전문지식 ① 중요 임상 증후군 ② 예방 접종 ③ 감염 관리 ④ 세균 감염 ⑤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⑥ 클라미디아 감염 ⑦ 바이러스 감염	

조항	현행		개정		비고
		⑧ 진균 감염 ⑨ 리케차 감염 ⑩ 기생충 감염 ⑪ 항생제 요법 2. 소아감염 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 진료 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4. 인성교육		⑧ 진균 감염 ⑨ 리케차 감염 ⑩ 기생충 감염 ⑪ 항생제 요법 2.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 진료 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4. 인성교육	
	학술회의	수련기간 중 분과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년 2회 이상 참석	학술회의(삭제)	수련기간 중 분과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년 2회 이상 참석(삭제)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소아감염 세부전문의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2조 2항 관련)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소아청소년 감염 세부전문의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1조 4항 관련)		
	별지서식목록		별지서식목록		
	제3호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3호	연수교육 등록용지	
	제4호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	제4호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5호	연수교육 등록용지	제5호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	



3.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2006. 2. 제정

2011. 3. 1 개정

1.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시행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2.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8. 별표 목록

별표 1-1)	학술대회의 인정한계
별표 1-2)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별표 1-3)	집담회 및 연구회 인정한계
별표 1-4)	지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인정한계
별표 1-5)	지회, 병원, 개원의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 내용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각 분과 별 기준
별표 6)	경과규정
별표 7)	교육 내용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시행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I.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

1. 2005. 6. 15 :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을 확정하여 시행
2. 2006. 3. 8 :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경과규정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중 제5조(교육기관) 수정(3차 회의록 참조)
3. 2007. 2. 8 :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제5조(조직) 수정(4차 회의록 참조)
4. 2010. 11. 8 :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전면 개편 수정시작 (2010년 2차, 3차, 4차, 5차, 2011년 1차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변경 대비표 참조)

II.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2011. 3. 1 :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수정에 맞추어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전면 개편 수정안이 의학회 승인 후 시행됨

2.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내분비학에 대한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3명(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부회장 등)과 일반 위원 4명이 위원이 된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ㄱ.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 ㄴ.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제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ㄷ.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내분비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a) 전임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 2년차 또는 3년차 이상 근무

- b)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 c)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 d) 연구소 근무
 - e) 해외연수
 - f) 기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험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

- ①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보칙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과학회
2. 대한소아내분비학회
3.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하는 인정 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ㄱ.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ㄴ.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ㄷ.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ㄹ.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 ②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최대 1일 4평점 이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별표 1-1 참조).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혹은 의학회 평점 신청 후 발행된 평점카드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평점을 부여하고, 제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

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소아청소년 내분비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소아청소년 내분비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ㄱ.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 ㄴ.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제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ㄷ.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내분비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아래 수련 내용을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ㄱ. 연수교육 :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ㄴ. 논문 제출 :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참조)에 제1저자 또는 공저자 1편 이상의 논문(원저, 증례, 종설)이 게재되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논문은 접수가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인 것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게재예정 증명서와 가제본 제출
 - ㄷ. 학술대회 참석: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 또는 관련학회(별표 1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참석
 - ㄹ.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 ㅁ.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20명 이상의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의 외래환자 진료, 10건 이상의 타과와의 진료 상담 실적이 있어야 한다.
 - ㅂ. 응시자격 심사 전 2년 동안, 연속으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 a항과 b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a)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b)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집담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연구회 제외).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ㄱ.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ㄴ. 별지 제6-2호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ㄷ.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ㄱ.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 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 ㄷ. 별지 제10-2호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 ㄹ.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과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

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②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a) 전임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 2년차 또는 3년차 이상 근무
 - b)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 c)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 d) 연구소 근무
 - e) 해외연수
 - f) 기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문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은 각각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 당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

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2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또는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2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2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체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

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 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 ② 별지 제17-2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또는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③ 별지 제18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 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 자격을 경과 규정에 의하여 서류 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세부전문의 자격 상실 후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 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 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 자격을 경과 규정에 의하여 서류 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세부전문의 자격 정지 후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 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은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간행이사 등에서 당연직 3명과 일반 위원 4명을 선정한다.
- ③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④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당연직 위원 및 일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소위원회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회비와 특별 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 행정요원

-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행정요원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학술대회의 인정한계:(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1평점/일)	
국내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4평점/일	국내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갑상선학회 ¹⁾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2평점/일		
국외	미국내분비학회, 미국당뇨병학회, 유럽소아내분비학회, 미국-유럽소아내분비학회, 아시아태평양소아내분비학회, 국제당뇨연맹	2평점/일	국외	한일당뇨병학회, 아시아당뇨병학회, 세계당뇨병학회, 유럽당뇨병학회, 아시아내분비학회, 유럽내분비학회, 세계내분비학회, 한중일갑상선심포지움, 아세아갑상선학회, 세계갑상선학회, 세계비만학회, 미국골대사학회, 유럽갑상선학회, 일본내분비학회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¹⁾ 대한갑상선학회는 2011년 추가, 평점은 2011년부터 인정

<별표 1-2>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비고
대한소아과학회	소아내분비 세분전문의 또는 소아내분비학회가 인정하는 강사가 연자인 강좌가 전체 강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인이 강의한 시간을 합산하여 분은 절하한 후 시간 당 1평점, 하루 최대 6평점을 인정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의학회 평점 인정(하루 최대 6평점)
아시아태평양소아내분비학회	전임의 meeting 인정 (2평점/일)
미국내분비학회 미국당뇨병학회 유럽소아내분비학회 미국-유럽소아내분비학회 국제당뇨연맹	전임의 Training program 불인정

-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1-3〉 집담회 및 연구회 인정한계: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비고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집담회: 1시간 당 1평점 연구회: 1시간 당 1평점

평점을 인정하는 연구회와 집담회 종류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결정한다.

-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1-4> 지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인정한계: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과학회	인정 (2평점/일)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인정 (1평점/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인정 (2평점/일)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인정 (2평점/일)	대한갑상선학회 ¹⁾	2011년부터 인정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¹⁾ 대한갑상선학회는 2011년 추가, 평점은 2011년부터 인정

<별표 1-5> 지회, 병원, 개원의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비 고
대한소아과학회 지회	불인정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지회	1) 자격갱신 시에는 평점 인정(하루 최대 6 평점, 시간 당 1평점) 2) 첫 자격인정 시험 시에는 불인정
대한당뇨병학회 지회 대한내분비학회 지회	1) 자격갱신 시에는 평점 인정(하루 최대 6 평점, 시간 당 1평점) 2) 첫 자격인정 시험 시에는 불인정
위 4개 단체를 제외한 동문회, 병원, 개원 의협의회 등 단체에서 주관	불인정

-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각 분과 별 기준(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분과	학술지	비고
소아청소년내분비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내분비학회지 당뇨병학회지 대한비만학회지 임상당뇨병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골대사학회지 SCI 및 SCIE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2006년 2월부터 평점 인정
	대한갑상선학회지	2011 추가 평점은 2011년부터 인정
<p>1)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학술지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미 출판된 것은 별책 제출하고, 게재예정은 게재예정 증명서와 가제본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예정 논문은 접수가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것만 인정 - 출판 예정인 논문은 게재예정 증명서와 가제본 제출 <p>2) SCI 및 SCIE에 등재된 학술지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는 내분비 관련 논문만 인정[관련성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판단]</p>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각 분과 별 기준(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 내분비	교육지도자수 + 1
	소아내분비 2년차 이상의 전임의는 전임의 정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4> 수련 내용: 각 분과 별 기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교육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참조)에 제1저자 또는 공저자 1편 이상의 논문(원저, 증례, 종설)이 게재되어야 한다. - 출판 예정 논문은 접수가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 인 것만 인정 - 출판 예정인 논문은 게재예정 증명서와 가제본 제출
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20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1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10건 이상
교육내용	별지 “교육 내용” 참조.
학술대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 또는 관련학회(별표 1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참석
정회원의 의무	응시자격 심사 전 2년 동안, 연속으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 a항과 b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a)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b)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집담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연구회 제외).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각 분과 별 기준(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2조 2항 관련)

분과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 내분비	1. 교육지도자수 : 1 명 이상 2. 병상 수 : 500 병상 이상 3. 진료시설 : 4. 관련 타과유무 : 내 과, 외 과, 산부인과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경과규정

한시적으로 수련인정과 서류심사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하여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아래 내용을 심사한다.

제1조(수련인정)

2006년 3월 이전에 소아과 전문의가 된 자 중에서 1항 또는 2항을 만족하는 자는 수련인정을 분과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통과를 거친 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소아내분비 전임의 수련을 받고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제2조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② 3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소아과 전문의로서, 인정자격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및 논문평점 60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제2조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제2조(정회원의 의무)

- ① 수련인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② 수련인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하였거나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집담회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제3조(서류심사 자격인정)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서는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타 분과의 세부전문의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① 대학병원에서 소아내분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동일 전공의 해외연수를 마친 부교수 이상의 직책을 수행중인 교육지도자
- ②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1985년 이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소아내분비학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정회원인 자

상기 기준에 합당하여 소아내분비 수련인정과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의사면허증 사본,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각 1부씩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제정

2011.3.1 공고: 2011년부터 이후 더 이상 추가로 경과규정에 따른 세부전문의 인정하지 않음

<별표 7> 교육 내용

제 1장 검사 및 처치

1. 내분비-대사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다음 사항을 설명한다.
 - 1) 임상검사
 - 2) 면역측정법
 - 3) 핵의학적 검사 및 치료
 - 4) 초음파 검사
 - 5) 방사선 검사
 - 6) 영상검사
 - 7) 자극 및 억제검사
 - 8) 갑상선 세침흡인세포진 검사
2. 호르몬의 분류와 작용 기전을 설명한다.
3. 성장
 - 1) 정상 성장유형
 - 2) 성장 평가방법을 설명한다.
 - 3) 성장장애질환의 원인을 열거한다.
 - 4) 과성장과 고신장의 원인과 진단방법을 설명한다.

제 2장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

1.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 1)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와의 구조적 특성 및 기능적 연관성을 설명한다.
 - 2) 뇌하수체문맥(hypophyseal portal veins)의 구성과 흐름을 이해한다.
 - 3) 각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분비특성 및 작용을 이해한다.
 - 4) 각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분비능 검사를 설명한다.
 - 5) 복합뇌하수체 자극 검사를 설명한다.
2.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1)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의 원인을 열거한다(Etiology of hypopituitarism).
 - 2) 병태생리, 임상 상 및 진단의 원칙을 설명한다.
3. 성장호르몬결핍증

- 1) 성장호르몬과 인슐린양 성장인자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 2) 인슐린양 성장인자의 생물학적 기능을 열거한다.
 - 3) 인슐린양 성장인자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4) 성장호르몬 치료의 적응증을 설명한다.
 - 5) 성장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설명한다.
 - 6) 성장호르몬 저항증후군을 설명한다.
4. 뇌하수체기능항진증
 - 1) 뇌하수체 기능항진증의 원인을 열거한다.
 - 2) 병태 생리, 임상상 및 진단의 원칙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5. 뇌하수체 종양
 - 1) 뇌하수체 종양의 임상적, 기능적 및 면역조직학 분류 및 역학을 이해한다.
 - 2) 증상
 6. 항이노호르몬의 분비특성 이해
 - 1) 뇌하수체 후엽의 해부학적 소견을 설명한다.
 - 2) ADH의 분비기전을 설명한다.
 - 3) ADH의 osmotic regulation을 설명한다.
 7. 요붕증
 - 1) Diabetes insipidus의 원인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병태생리 및 임상 상을 설명한다.
 - 3) 수분제한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4) 진단방법 및 치료를 설명한다.
 8. 항이노호르몬 과다분비 증후군(SIADH)
 - 1) 원인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임상 상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4) 지나트륨 혈증의 감별진단을 열거한다.

제 3장 갑상선

1. 갑상선 호르몬

- 1) 갑상선호르몬의 생합성 과정을 이해한다.
- 2) 신생아기의 갑상선의 기능변화를 설명한다.
- 3)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정상적인 조절을 설명한다.
- 4) 임상적으로 유용한 갑상선 호르몬 측정법을 설명한다.
- 5) 유리 갑상선 호르몬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한다.
- 6) 갑상선호르몬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전을 설명한다.

2.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1)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빈도와 원인을 열거한다.
- 2)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임상증상 및 진단을 설명한다.
- 3) 신생아 갑상선 집단 선별검사의 의미 및 방법을 설명한다.
- 4)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3.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흔한 원인을 열거한다.

4. 항갑상선 호르몬 결합 그로불린(TBG)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한다.
5. 갑상선 자가항체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6. 갑상선 주사(scan)를 판독 할 수 있어야 한다.
7. TRH 자극시험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8. 갑상선 기능 측정의 선별 검사법을 설명한다.

9. 미세침 흡인 세포진단 검사

10. 갑상선기능항진증

- 1) 원인질환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그레이브스병의 발병기전을 설명한다.
- 3) 그레이브스병의 임상 상을 설명한다.
- 4)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방사선 옥소치료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 5) 갑상선 중독 위기를 설명하고 이를 치료한다.
- 6) 안구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한다.

11. 갑상선종대의 원인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12. 갑상선염

- 1) 갑상선염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의 발병기전을 설명한다.
- 3) 만성 갑상선염의 진행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설명한다.

13. 갑상선 종양

- 1) 갑상선 종양을 분류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갑상선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상을 설명한다.
- 3) 갑상선 악성 종양을 수술 적 치료를 설명한다.
- 4) 갑상선 악성 종양에 대한 방사선 옥소치료를 경험한다.

제 4장 당뇨병과 저혈당

1. 대사조건에 다른 당대사의 항상성(homeostasis)을 설명한다.

2. 인슐린

- 1) 인슐린 분비의 특성을 설명한다.
- 2) 임상적으로 유용한 인슐린 분비 자극 검사를 설명한다.
- 3) 혈청 C-펩타이드의 측정 의미를 설명한다.
- 4) 인슐린저항성을 측정하는 검사를 설명한다.

① HOMA ② IVGTT(minimal model)

③ Euglycemic clamp test

3. 당뇨병

- 1) 경구당 부하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2) 당화혈색소/후룩토사민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3) 제 1형 및 제 2형 당뇨병의 발병기전을 설명한다.
 - 4)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청에서 검출되는 자가항체의 종류와 의의를 설명한다.
① ICA ② IAA ③ Anti-GAD Ab.
④ IA-2 등
 - 5) 당뇨병을 분류하고 그 임상적 의의를 설명한다.
 - 6) 이차성 당뇨병을 초래하는 질환을 열거한다.
 - 7)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 기준 및 치료를 설명한다.
 - 8) 혈당관리 기준을 설명한다.
 - 9) 식사요법을 설명한다.
 - 10) 운동요법을 설명한다.
 - 11) 경구혈당강하제를 작용별로 분류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12) 인슐린 치료의 적응증과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13) 인슐린 펌프, 웨장 또는 웨도세포 이식을 설명한다.
 - 14) 당뇨병 환자의 수술시 관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 15) 당뇨병 환자의 임신시 관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4. 당뇨병성 급성 합병증
- 1)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의식장애의 원인을 열거한다.
 - 2)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 치료원칙을 설명한다.
 - 3) 고삼투압성 혼수의 치료를 설명한다.
5.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

- 1) 신경병증을 분류한다.
- 2) 말초 신경병증의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자율신경병증의 진단방법과 임상상을 설명한다.
- 4) 신경병증의 관리를 설명한다.
- 5) 망막병증을 분류 및 설명한다.
- 6) 망막병증의 관리를 설명한다.
- 7) 신증의 관리를 설명한다.

6. 저혈당

- 1) 인슐린 길항 호르몬을 열거하고 설명한다.
 - 2) 원인을 열거하고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설명한다.
 - 3) 인슐린종의 진단 및 치료를 설명한다.
 - 4) 저혈당증의 치료를 설명한다.
7. 대사성 증후군의 구성 및 의의를 설명한다.

제 5장 칼슘, 인 및 골대사

1. 칼슘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 1)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특성과 작용을 설명한다.
- 2) 임상적으로 유용한 부갑상선 호르몬 측정법을 설명한다.
- 3) 비타민 D의 활성화 과정과 작용을 설명한다.
- 4) 칼세토닌의 작용을 설명한다.

2. 고칼슘혈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응급 및 유지 치료를 설명한다.
- 4)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 진단 및 치료를 설명한다.
- 5) 원발성, 이차성,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차이를 설명한다.
- 6)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관련된 다선 신생물을 설명한다.
- 7) 악성 종양에서 동반되는 고칼슘혈증의

발생기전을 설명한다.

3. 저칼슘혈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응급 및 유지 치료를 설명한다.
- 4) 부갑상선기능저하증,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가성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감별진단한다.

4. 골다공증

- 1) 골다공증의 분류를 설명하고 발병기전을 설명한다.
- 2) 골밀도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3) 골대사 생화학지표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4) 치료 약제를 열거한다.

5. 골연화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임상 상 및 진단과 치료를 설명한다.

제 6장 부 신

1. 부신 호르몬

- 1) 정상적인 코르티코이드 및 부신 안드로겐 분비를 설명한다.
- 2) 정상적인 알도스테론 분비를 설명한다.
- 3) 부신에서 정상적인 카테콜아민 분비를 설명한다
- 4) 임상적으로 유용한 부신호르몬 측정법을 설명한다.
- 5) 인슐린유발 저혈당에 의한 ACTH-코르티졸 분비검사 및 그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6)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 및 그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7)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 (CRH) 자극 검사 및 그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8) Dexamethasone 억제시험 및 그 임상

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2. 선천성 부신피질과형성증

- 1) 유전적 결함이 있는 부위를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4) 부신위기의 증상 및 치료법을 설명한다.

3. 부신기능저하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4) 자가면역성 다선 기능부전증을 분류하고 설명한다.

4. 알도스테론증

- 1) 원발성 및 이차성 알도스테론증을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원인질환에 따른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5. 저알도스테론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6. 부신 종양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감별진단한다.
7. 스테로이드 호르몬 약물의 사용상 주의점을 설명한다.

8. 갈색세포종

- 1) 임상상을 설명한다.
- 2) 생화학적 진단 및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제 7장 성분화 이상질환 및 성선 이상

1. 정상적인 성 분화과정을 설명한다.
2. 염색체 이상에 의한 성 분화장애의 발병기

전, 임상상,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1) 크라인펠터(Klinefelter syndrome) 증후군(세정관 형성 이상)
 - 2) 터너 증후군(Turner's syndrome) (성선 형성 이상)
 - 3) 혼합 성선 형성 이상
 - 4) 진성 반음양증
3. 성선 이상에 의한 성 분화장애의 발병기전, 임상상,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1) 순수 성선형성 이상
 - 2) 무고환 증후군
4. 표현형 이상에 의한 성 분화장애의 발병기전, 임상상,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1) 여성 가성 반음양증
 - 2) 남성 가성 반음양증

제 8장 사춘기 이상질환

1.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를 이해한다.
2. 사춘기 급성장을 이해한다.
3. 성조숙증
 - 1) 진단기준과 진단과정을 설명한다.
 - 2) 성조숙증과 사춘기 발달의 정상변이를 감별한다.
 - 3) 성조숙증을 분류한다.
 - 4)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효능약제의 적응증을 설명한다.
4. 사춘기 지연의 원인을 열거한다.

제 9장 기타 대사 질환

1. 고지단백혈증
 - 1) 정상적인 지단백 대사를 설명한다.
 - 2) 지단백 측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3) 고지단백혈증을 분류한다.
 - 4) 고지단백혈증의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2. 비만증
 - 1) 체중유지에 관련된 요인들을 열거하고 설명한다.
 - 2) 비만증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한다.
 - 3) 체중감량을 위한 열량을 처방한다.
 - 4) 열량제한 식사를 설명한다.
 - 5) 식사요법의 효과와 주의 점을 설명한다.
 - 6) 운동요법의 효과와 주의 점을 설명한다.
 - 7)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의 효과와 주의점을 설명한다.
 - 8) 비만증의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3. 선천성 대사질환
 - 1) 선천성 대사질환의 신생아 감별검사의 의미와 방법을 숙지한다.
 - 2) 선천성 대사질환을 분류한다.
 - 3) 선천성 대사질환의 진단방법과 치료를 설명한다.

제 10장 호르몬과 종양

1. 종양에 대한 호르몬의 영향을 설명한다.
2. 이소성 호르몬 분비의 종류 및 특성을 설명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2.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소아내분비 명칭은 모두 소아청소년 내분비로 변경(학회명 제외)
2	제 2 조 (정의)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1) 관련학과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음 2) 세분전문의 취득 후 1차진료 개원의로 근무하는 분과가 있음
3	제 3 조 (의의)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내분비학에 대한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3조] 의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의 자격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내분비학에 대한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문장 명확히
4	제 4 조 (조직)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 학술, 기획이사 등 당연직 3명과 일반 위원 4명이 위원이 된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3명 이상(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부회장 등)과 일반 위원 4명이 위원이 된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1) 3명 이상의 당연직 2)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무 삼입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p>[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p> <p>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학술대회를 포함 10평점으로 확대</p> <p>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해야함을 규정</p>
6	<p>제 5 조 (수련)</p> <p>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②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p> <p>③ 수련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p> <p>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6조] 수련</p> <p>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p> <p>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ㄱ.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p> <p>ㄴ.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제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ㄷ.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1)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한다.</p> <p>2) 최소 수련기간 규정</p> <p>3) 군대 및 공중보건의 전역자에 관한 조항 추가.</p> <p>4) 교육지도자 부재시 수련지침 규정</p> <p>5) 별지 서식 번호 변경</p>
7	<p>제 6 조 (수련병원)</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p>	<p>[제7조] 수련병원</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내분비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한다.</p> <p>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내분비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수련병원의 재인증 규정 보강
8	<p>제 7 조 (자격인정)</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자격 인정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p> <p>ㄱ.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p> <p>ㄴ.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②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③ 단,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8조] 자격인정</p> <p>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a) 전임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 2년차 또는 3년차 이상 근무</p> <p>b) 1, 2, 3차 병원에서 근무</p> <p>c)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p> <p>d) 연구소 근무</p> <p>e) 해외연수</p> <p>f) 기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수련기간을 최소 요건 1년 + @로 규정하여, 공통적인 응시자격을 위한 최소 취득평점은 1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여부는 분과학회에서 결정함</p> <p>해외 수련시 자격인정 규정을 추가</p> <p>③의 서류 심사 과정 삭제</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p>ㄴ.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9	<p>제 8 조 (시험)</p> <p>① 세부 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세부 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9조] 시험</p> <p>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10	<p>제 9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p> <p>①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p> <p>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p>	<p>[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p> <p>①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p> <p>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p>	
11		<p>[제11조] 보칙</p> <p>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p>	
	<p>경과규정</p> <p>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p>		부칙으로 이동
		<p>부 칙</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p>	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p>	

3.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1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2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를 삭제함.
3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분과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4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②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소아과학회 2. 대한소아내분비학회 3.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과학회 2. 대한소아내분비학회 3.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하는 인정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6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내분비학회와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분과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ㄴ.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ㄷ.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ㄹ.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연수교육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p> <p>①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지 및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에 공고하며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p>	<p>[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p> <p>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p> <p>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여야 한다.</p>	<p>계획서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설되어 시행 예정 혹은 시행한 연수강좌에 대한 인정조항 추가</p>
8	<p>제8조 (등록 및 등록비)</p> <p>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8조] 등록 및 등록비</p> <p>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교재대를 교재료로 변경</p>
9	<p>제9조 (실시결과 보고)</p> <p>연수강좌 및 실습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 실시결과 보고</p> <p>연수강좌 및 실습 후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주체 명확하게 기술</p> <p>서식 제5호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삭제</p>
10	<p>제10조 (평점카드 교부)</p> <p>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p>	<p>[제10조] 평점카드 교부</p> <p>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p>	<p>주체 명확하게 기술</p>
11	<p>제11조 (평점)</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p> <p>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또는 등록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제11조] 평점</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p> <p>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p>	<p>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강좌 또는 실습을 10평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p> <p>학술대회 평점인정기준에 대한 재논의 결과 분과학회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함</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③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시 제 1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 평점을 가산한다.</p> <p>④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게 2평점을 가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⑤ 교육회기 동안 본 학회 및 인정학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1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최대 1일 일 4평점 이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1-1 참조).</p> <p>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혹은 의학회 평점 신청 후 발행된 평점카드로 증빙할 수 있다.</p> <p>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p> <p>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 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참석 증빙에서 명찰 추가 인정</p> <p>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KMA 교육센터 발행 확인서)</p>
12	<p>제12조 (기록 보관)</p> <p>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2조] 기록 보관</p> <p>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주체 명확하게 기술
13	<p>제13조 (보칙)</p> <p>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3조] 보칙</p> <p>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주체 명확하게 기술
	<p>부칙</p> <p>① 본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4.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체 명확하게 기술
2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소아청소년 내분비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를 수련 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소아청소년 내분비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주체 명확하게 기술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전임의 수련병원의 자격이 생성되므로 논리에 맞지 않아 변경
3	제 3조 (수련) 소아과전문의로서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내분비 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주체 명확하게 기술
4	제 4조 (수련기간) ①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련기간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군 전역자를 위한 수련기간 명시 교육지도자 부재시의 수련인정기간 규정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p>ㄱ.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 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p> <p>ㄴ.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 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 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제 16- 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p> <p>ㄷ.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 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p> <p>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 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별지 서식 번호 변 경
5	<p>제 5조 (전임의 정원)</p> <p>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 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p> <p>②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전임 의 정원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 다)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 전임의 정원</p> <p>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 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p>	주체 명확화
6	<p>제 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① 소아내분비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 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 내분비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 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 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 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 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 다.</p> <p>②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p>	<p>[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영 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내분비 환 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 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 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 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② 아래 수련 내용을 이수하여야 응시자격 이 주어진다.</p> <p>ㄱ. 연수교육 :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 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 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 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 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 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ㄴ. 논문 제출 :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 내(교육회기 기준)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p>	수련 내용을 2항에 구체적으로 제시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p>참조)에 제1저자 또는 공저자 1편 이상의 논문(원저, 증례, 증설)이 게재되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논문은 접수가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인 것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게재예정 증명서와 가제본 제출</p> <p>㉔. 학술대회 참석: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 또는 관련학회(별표 1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참석</p> <p>㉕.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p> <p>㉖.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20명 이상의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의 외래환자 진료, 10건 이상의 타과와의 진료 상담 실적이 있어야 한다.</p> <p>㉗. 응시자격 심사 전 2년 동안, 연속으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 a항과 b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p> <p>a)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p> <p>b)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집담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연구회 제외).</p>	
7	<p>제 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p> <p>①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p> <p>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p>	<p>[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p> <p>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p> <p>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p>	
8	<p>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①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p>	<p>[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㉔.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p>	<p>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의무를 각 수련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p>2.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p> <p>3.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p> <p>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ㄴ. 별지 제6-2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 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p> <p>ㄷ.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p> <p>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변경함(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p> <p>서식 번호 변경</p>
9	<p>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p> <p>①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p> <p>2.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p> <p>3.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연도 수련 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교육지도자 명부</p> <p>②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p> <p>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ㄱ.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p> <p>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p> <p>ㄷ. 별지 제10-2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 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연도 수련 이수자 명부</p> <p>ㄷ.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p> <p>②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의무를 각 수련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 변경함</p> <p>(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p> <p>주체 명확화</p> <p>연도 -> 연도</p> <p>서식 번호 변경</p>
10	<p>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p> <p>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p> <p>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 수련을 받을 수 없다.</p>	<p>[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p> <p>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p> <p>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 수련을 받을 수 없다.</p>	
11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과책임자는 학회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학회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p>	<p>수련병원의 신규지정으로 수정</p> <p>주체 명확하게 기술</p> <p>소아과학회에서는 각 분과세부전문 관리위원회에 12월 말까지 신규 수련병원 승인을 신청할 것을 공지한다(연수교육계획서 제출 공지와 함께)</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1		<p>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새롭게 전임의 교육을 시작하려고 계획하는 경우(매해 3월부터 전임의교육회기가 시작됨), 미리 신규 수련병원 신청을 하여 교육회기 시작전 2월까지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전임의 수련 인정을 받을 수 있다.</p> <p>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의무를 각 수련병원 소아과 책임자에서 해당분과 교육지도자로 변경함(교육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을 맡을 책임 교육지도자를 선임하여 시행한다)</p> <p>서식 번호 변경</p>
12	<p>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주체 명확화</p> <p>수련병원 재인증 관련 조항 추가</p>
13	<p>제 13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p> <p>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p>	<p>[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p> <p>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p>	<p>주체 명확화</p>
14	<p>제 14조 (수련병원의 심사)</p> <p>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p> <p>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p>	<p>수련병원 자격심사 및 갱신으로 수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는다.</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4		<p>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각 분과위원회는 각 수련병원 별로 5년마다 시설 및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아과 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 교부 받아야 한다.</p> <p>주) 교육지도자 부재시에도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전임의 교육이 가능하므로, 수련병원 자격유지가 가능한 최대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부재기간이 최대 1년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p>
15	<p>제 15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p> <p>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p>[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p> <p>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②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주체 명확화
16	<p>제 16조 (보칙)</p> <p>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5조] 보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p>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끝난 수련을 인정할 수 있다. 	<p>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1	<p>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p>제 2조 (응시자격)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로 한다.</p>	<p>[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내분비 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a) 전임의: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 2년차 또는 3년차 이상 근무 b)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c) 의학입계 또는 약학 관련입계에서 근무 d) 연구소 근무 e) 해외연수 f) 기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ㄴ.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p>	<p>현행 규정 중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조항을 삭제함</p> <p>2006년 이전에 전임의를 이수한 자로서 이후 한시적 경과규정으로 시행된 서류심사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전임의 이수자 중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지 않은 자는 세부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총칙과 중복되므로 삭제여부 결정)</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p>특한 자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 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 도로 정한다.</p>	
3	<p>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내분비 전문과목으 로 한다.</p> <p>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 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 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 술시험으로 한다.</p> <p>제 4조 (수험절차)</p> <p>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 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 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 험을 면제한다.</p>	<p>[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문 과목으로 한다.</p> <p>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 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은 각 각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 험으로 한다.</p> <p>④ 1차 시험 당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 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 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 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 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 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p>	<p>제 4조 수험절차 조 항은 삭제하고 4조 내용을 3조 4항으로 이관한다.</p> <p>1차시험에 합격한자 에 한하여 2차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는 조항은 삭제함 (분과 자체 인정 후 진행) -> 당일 2차 시험 가능함</p>
	<p>제 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p> <p>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p> <p>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 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세부전문 관리위원 회(이하 “관리위원회”이라 한다) 위원장 과 소아내분비 세부전문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공 고한다.</p>	<p>[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p> <p>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p> <p>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 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 부전문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소아청 소년 내분비 세부전문 관리위원회 위 원장이 공고한다.</p>	<p>주체 명확화</p>
6	<p>제 6조 (응시원서)</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 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p>1. 소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p> <p>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 임의 수련이수증명서</p> <p>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 록지 및 증빙 서류 사본</p> <p>4.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 수증명서</p> <p>5.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p>	<p>[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 부전문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한다.</p> <p>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p> <p>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p> <p>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 임의 수련이수증명서</p> <p>④ 별지 제17-2호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 부전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 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 [http:// 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p>	<p>별지 서식 번호 변 경</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p>록부 사본(원본 대조필)</p> <p>6.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 평가서(소아과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p> <p>7.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p> <p>8.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관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p>	<p>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또는 국제 학회 참석 증빙 자료), 논문 별책 사본 1부</p> <p>⑤ 별지 제18-2호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p> <p>⑥ 별지 제6-2호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p> <p>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 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p> <p>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 증명서)</p> <p>⑨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관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p>	<p>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p> <p>별지 서식 번호 변경</p>
7	<p>제 7조 (시험위원회 선출)</p> <p>①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 (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p> <p>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 (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p>	<p>문제 출제, 선택, 채점, 감독, 실기 시험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며, 선택위원과 감독위원은 중복이 가능하나, 감독위원과 채점위원은 겹치지 않아 선출할 수 없다.</p>
8	<p>제 8조 (시험문제 및 배점)</p> <p>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p>		3조에 통합
9	<p>제 9조 (채점)</p> <p>채점은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p>	<p>[제7조] 채점</p> <p>채점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p>	
10	<p>제 10조 (합격자 결정)</p> <p>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p> <p>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p>	<p>[제8조] 합격자 결정</p> <p>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p> <p>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1	<p>제 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p> <p>① 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③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p> <p>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변동 없음</p> <p>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한 처리규정 - 관리규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시험시작 시간 이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을 시험공고 안내와 수험표 하단에 명확히 기재하고, 시험시작 이후 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p>
		<p>[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p> <p>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p> <p>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p>	<p>추가신설</p>
12	<p>제 12조 (보칙)</p> <p>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 보칙</p> <p>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p>	
	<p>부칙</p> <p>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6.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1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자격)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자격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만 65세 이상인 자 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 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갱신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 -해외체류의 성격을 규정할 것인지 토의필요(단순체류 혹은 해외연수) 별지 서식 번호 변경
3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갱신 교부 시 수수료 징수 항목 추가
4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② 별지 제17-2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또는 국제학회 참	별지 서식 번호 변경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4. 기간내 발표된 논문 목록 및 별책	석 증빙 자료), 논문 별책 사본 1부 ③ 별지 제18호[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제 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 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내분비 세부전문 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세부전문 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 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에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 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세부전문 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 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 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 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 의 자격을 경과 규정에 의하여 서류 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 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 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세부전문 의 자격 상실 후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 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항, 2항에 세부사항 추가
7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 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 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 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 년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 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 의 자격을 상실하며 ,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 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 의 자격을 경과 규정에 의하여 서류 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 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 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세부전문 의 자격 정지 후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 교육 및	1항, 2항에 세부사항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논문으로 20평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p>제 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 보칙</p> <p>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 학회에서 정한다.</p>	
	<p>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7.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별표에서 규정으로 옮김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 규정된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기능) 분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하 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분과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 기능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시 기능 추가 4) 산하 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은 삭제
3	제 3조(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분과학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2)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분과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3조] 조직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은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간행이사 등에서 당연직 3명 이상 과 일반 위원 4명을 선정한다. ③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④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당연직 위원 및 일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은 3명 이상 2)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무 삽입
4	제 4조(회의) 1) 분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분과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제4조] 회의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할 때 소집한다. ②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5	제 5조(소위원회) 1) 분과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분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소위원회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재정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6	제 6조(행정요원) 1) 분과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행정요원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요원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2006. 9. 1 제정

2011. 3. 1 개정

1.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시행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2.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대한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8. 별표 목록

별표 1-1)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별표 1-2)	학술대회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 내용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별표 6)	경과규정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

1. 2005. 6.15 :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확정하여 시행
2. 2006. 3. 8 :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경과규정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중 제5조(교육기관) 수정(3차 회의록 참조)
3. 2007. 2. 8 :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제5조(조직) 수정(4차 회의록 참조)
4. 2010. 11. 8 :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전면 개편 수정 시작(2010년 2차, 3차, 4차, 5차, 2011년 1차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 회의록 및 변경 대비표 참조)
5. 2011. 3. 1 :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수정안이 의학회 승인 후 시행됨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

2010. 11. 8 :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전면 개편 수정에 맞추어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전면 개편 수정

2.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학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세부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소화기영양학에 대한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일반 위원 0명을 임명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단, 부회장, 총무 이사, 학술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평점 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

- 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 기간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 기간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7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과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8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자격인정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수련 내용 (별표 4 참조)을 이수한 자

1. 해당분야라 함은 1, 2, 3차 병원,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 연구소,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
2.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한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을 득한 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험

- ① 세부 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부 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소아과학회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 ③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와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별표1-1, 1-2).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지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4호 개정 및 별지 5호 삭제)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연수교육 참석 증빙방법 확대 및 변경)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1일 최대 6점), 학술대회는 1일 4평점,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 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정 카드 혹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별표2)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 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영양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별표 3).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

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은 별도(별표 4)로 정하며, 수련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소화기영양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 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5). (별지내용 변경)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 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지내용 변경)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견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자격인정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수련 내용(별표 4 참조)을 이수한 자
 1. 해당분야라 함은 1, 2, 3차 병원,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 연구소,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
 2.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한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을 득한 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전문 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아소화기영양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응시 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별지내용 변경)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 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9]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행위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평점과 논문평점을 합산하여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4. 기간 내 발표된 논문 목록 및 별책 (별지내용 변경)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

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 1항에 규정된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고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③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관리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일반 위원 0명을 임명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단, 부회장, 총무 이사, 학술 이사는 당 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 회의

-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③ 회의 결과는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별 표 목 록

<별표 1-1> 연수강좌 및 실습의 인정한계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비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간학회 대한Helicobacter 및 상부위장관연구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의학회 평점 인정 (1일 최대 6평점) 심포지움: 1시간 당 1평점 위커숍: 1시간 당 1평점 집담회: 1시간 당 1평점 연구회: 1시간 당 1평점
전 세계 및 지역별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Nutrition 관련 학회 전 세계 및 지역별 Gastroenterology, Hepatology, Nutrition 관련 학회	1일 최대 6평점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 1) 인정 학회의 지회에서 개최한 연수강좌와 실습은 학회에서 주최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점을 인정한다.

**<별표 1-2> 학술대회의 인정한계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1평점/일)	
국 내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4평점/일	국 내 영양에 관련된 제반 학회
	대한소아과학회	3평점/일	
	대한소화기학회	2평점/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간학회		
	대한Helicobacter 및 상부위장관연구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비만학회			
국 외	전 세계 및 지역별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Nutrition 관련 학회	2평점/일	국 외 전 세계 및 지역별 소아과학회
국 외	전 세계 및 지역별 Gastroenterology, Hepatology, Nutrition 관련 학회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6항 관련)

분과	학술지
대한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소화기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간학회지 대한 <i>Helicobacter</i> 및 상부위장관연구학회지 대한장연구학회지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대한비만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지 기타 국내 학술지에 영양 및 소화기 관련 논문이 게재된 경우도 심사 후 인정 SCI 및 SCIE 등재 학술지(영양 및 소화기 관련 논문 게재 인 경우)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영양 및 소화기 관련 논문 게재 인 경우)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교육지도자수 + 2 2년차 이상의 전임의는 전임의 정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4> 수련 내용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2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회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단,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5평점 이상) 이수. 만약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 이수
학술대회 논문발표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명시된 학술대회 또는 대한 소아소화기영양학회 주최 실습에(별표1참조)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 게재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6항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참조)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게재 예정 증명서 가능)
세부분과 진료내용	(1) 입원환자 진료 _100_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_300_명 이상 (3) 특수 술기 진료 _150_건 이상
교육내용	1. 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세부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4. 인성교육
학술대회 참석	교육회기 첫 1년 동안 대한소아소화기영양 인정학회 또는 관련학회(별표1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년 2회 이상 참석.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4회 참석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규정 제 11조 4항 관련)

분과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1. 교육지도자수 : __1_ 명 이상 2. 병상 수 : _500_ 병상 이상 3. 진료시설 : 내시경실 4. 관련 타과 :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6> 경과규정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서류심사 자격인정기준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5년이 지난 자로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2006년 9월 1일 현재 소아소화기영양학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2006년 9월 1일 이전 소아소화기영양학 분야에서 전임의로 수련을 받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자격 인정 시험을 면제하고 소정의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정의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소아과 수련병원

2. 교육지도자의 정의

- 1) 소아소화기영양학 세부전문의로서 정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임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소아소화기영양학 분야에서 진료, 교육, 연구에 업적이 있는 자
- 2) 비전임강사나 외래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기 기준에 합당하여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 16호),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전임의 수련증명서 등을 각 1부씩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과 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시행하지 않는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2.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시행 규칙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소아과 명칭은 모두 소아청소년과 로 변경 (분과는 삭제)
2	제 2 조 (정의)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아소화기영양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학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세부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소아를 소아청소년으로 변경 세부전문의의 취득 후 1차진료 개원의로 근무하는 분과가 있음
3	제 3 조 (의의)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소화기영양학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3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소화기영양학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4	제 4 조 (분과) 대한소아과학회는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전문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제 4조는 모두 삭제
5	제 5 조 (조직)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학회 총무가 간사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 인을 임명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일반 위원 0명을 임명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단, 부회장, 총무 이사, 학술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위원의 임기는 분과 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의 임기에 따르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통상 2년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6	제 6 조 (학술 및 연수교육) ①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소아소화기영양 분과는 연수 강좌 및 실습 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아소화기영양 분과가 인정하는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학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학술대회를 포함 10평점으로 확대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해야함을 규정
7	제 7 조 (수련) ①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수련 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 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련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 기간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 기간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 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최소 수련기간 규정 군대 및 공중보건의 전역자에 관한 조항 추가. 교육지도자 부재시 수련지침 규정 별지내용 변경
8	제 8 조 (수련병원) ① 수련 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해당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제7조] 수련병원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학 분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	수련병원의 인증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 하고 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관리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p>	<p>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수련병원의 자격을 5년간만 자동 인정하는 문구 추가함</p>
9	<p>제 9 조 (자격인정)</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p> <p>ㄱ.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p> <p>ㄴ.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제8조] 자격인정</p> <p>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제 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자격인정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수련 내용 (별표 4 참조)을 이수한 자</p> <p>1. 해당분야라 함은 1,2,3차 병원,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 연구소,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p> <p>2.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한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을 득한 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자격인정 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최소 수련기간을 1년으로, 최소 취득평점을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추가 여부는 분과학회에서 결정함</p> <p>평점취득의 의무 사항 및 첫 1년간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 보장</p> <p>해외 수련 시 자격인정 규정을 추가</p>
부칙	<p>부칙</p> <p>① 본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부칙		<p>③ 경과규정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관리 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p>	

3.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1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4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술대회를 포함
5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대한소아과학회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③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수 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소아과학회 추가
6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별표 1-1, 1-2).	연수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하는 규정
7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지에 공고하며 교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	계획서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설되어 시행 예정 혹은 시행한 연수강좌에 대한 인정 조항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 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p>	<p>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p> <p>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p>	
11	<p>제11조 (평점)</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p> <p>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또는 등록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③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제 1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 평점을 가산한다.</p> <p>④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게 2평점을 가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⑤ 교육 회기 동안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한 평점을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주관하는 10평점을 포함하여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제11조] 평점</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p> <p>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1일 최대 6 평점), 학술대회는 1일 4평점,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 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정카드 혹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p> <p>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p> <p>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학술대회 평점인정기준에서 분과학회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함</p> <p>KMA 이수확인서상의 평점이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규정함</p> <p>학술대회 참석증빙방법 확대 및 변경</p> <p>국제학회 참석증빙 자료의 범위 확대</p> <p>연수교육 참석증빙방법 확대 및 변경</p> <p>연수교육 강의는 평점에서 제외함</p> <p>제1저자의 평점부여를 상향 조정함</p>
부칙	<p>부칙</p> <p>① 본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이하 각 규정마다 보칙을 수정함</p>

4. 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1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다시 환원함
4	제 4조 (수련기간) ①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련기간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3개월 이내 : 유예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 수련병원의 전임의 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소 수련기간 규정 군전역자를 위한 수련기간 명시 교육지도자 부재시의 수련인정 기준 추가 별지내용 변경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제 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①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② 수련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p>	<p>[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①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② 수련내용은 별도(별표 4)로 정하며, 수련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만 세부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p>	
11, 12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p> <p>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학회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소아소화기영양 분과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 별로 별도로 정한다.</p>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소화기영양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5).</p>	<p>제11조를 삭제하고 [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의 ②항으로 이동하여 자제히 기술</p> <p>수련 병원 인정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별지내용 변경</p>
13	<p>제 13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p> <p>소아소화기영양 분과 학회장은 수련병원의 소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p>	<p>[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p> <p>대한소아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p>	
14	<p>제 14조 (수련병원의 심사)</p> <p>소아소화기영양 분과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p>	<p>[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 심사 및 갱신</p> <p>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p>	<p>수련병원 자격심사 및 갱신으로 수정</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별지내용 변경 각 분과위원회는 5년마다 각 수련병원 별로 시설 및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아과 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 교부 받아야 한다.
16	제 16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아소화기 영양 분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1. 본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아소화기영양 분과는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끝난 수련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 및 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2	<p>제 2조 (응시자격)</p> <p>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p>	<p>[제2조] 응시자격</p> <p>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제 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자격인정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 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수련 내용 (별표 4 참조)을 이수 한 자</p> <p>1. 해당분야라 함은 1,2,3차 병원,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 연구소,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p> <p>2.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한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을 득한 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현행 규정 중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조항을 삭제함</p> <p>2006년 이전에 전임의를 이수한 자로서 이후 한시적 경과규정으로 시행된 서류심사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전임의 이수자 중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지 않은 자는 세부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평점의무를 이동하여 응시자격에 추가함</p> <p>해외수련 전임의의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 추가</p>
3	<p>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소화기영양 전문과목으로 한다.</p> <p>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p>	<p>[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전문 과목으로 한다.</p> <p>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p> <p>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p>	<p>제 4조 수험절차 조항은 삭제하고 제4조 내용을 3조 4항으로 이관</p>
3	<p>제 4조 (수험절차)</p> <p>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p>	<p>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p>	<p>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은 삭제함(분과 자체 인정 후 당일 2차 시험진행 가능함)
6	<p>제 6조 (응시원서)</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 사본 4.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6.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과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7.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 8. 사진 3매(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p>[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과 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시 원서(별지 제15호 서식)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책임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⑨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구비서류 목록에 응시원서 추가 별지내용 변경
7	<p>제 7조 (시험위원회 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p>[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문제 출제, 선택, 채점, 감독, 실기 시험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며, 선택위원과 감독위원은 중복이 가능하나, 감독위원과 채점위원은 겸임하여 선출할 수 없다.
8	<p>제 8조 (시험문제 및 배점)</p> <p>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p>	삭제	3조에 통합
11	<p>제 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 	<p>[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 	변동 없음 지각 시험응시자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1	<p>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③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에 대한 처리규정-관리규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시험시작 시간 이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을 시험공고 안내와 수험표 하단에 명확히 기재하고, 각각한 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p>
		<p>[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p> <p>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p> <p>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정을 따른다.</p>	<p>추가신설</p>
부칙	<p>① 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p>

6.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1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자격)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자격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만 65세 이상인 자 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 별지내용 변경
3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갱신 교부 시 수수료 징수 항목 추가
4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4. 기간내 발표된 논문 목록 및 별책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갱신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장 연수교육 참석 증빙방법 확대 및 변경 별지내용 변경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사본 1부</p> <p>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p> <p>4. 기간 내 발표된 논문 목록 및 별책</p>	
6	<p>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p>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에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p> <p>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p>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p>	①항에 세부사항 추가
7	<p>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p>	①항에 세부사항 추가 자격갱신의 재응시는 갱신대상 연도부터 불응의 경우 2년, 불합격의 경우 3년이내에만 가응함을 추가로 명시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분과학회 규정에 따르게 됨을 추가로 명시함.
부칙	① 이 규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

7.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 1항에 규정된 소아소화기영양학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규정”) 제5조 제 1항에 규정된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기능) 2.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제2조] 기능 2. 고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고시 기능 추가
3	제 3조 (구성) 1.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학회 총무가 간사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 0명을 임명한다. 4.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조직 ①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일반 위원 0명을 임명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단,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 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조직 개편 (부위원장 제외, 위원 중에서 간사 1인 선출)
부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



5.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2005. 6. 15 제정

2011. 3. 1 개정

1.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소아청소년 신경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신경학에 대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③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④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참조)

[제6조] 수련

-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 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참조)

[제7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 신경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추천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참조)

[제8조] 자격인정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인정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a)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 b)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 c) 연구소 근무
 - d) 해외연수
 - e)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3.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4.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한 자.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5.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

- a.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 b.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 c.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 ② 해외에서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시험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참조)

[제9조] 시험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참조)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

- ①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참조)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2.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 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 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 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대한소아과학회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 ③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제6조] 연수 교육의 인정 한계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 ②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제7조] 연수 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 1호 및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 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 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 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 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 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대한소아신경학회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신경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 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제6조 제2항 참조)는 최대 1일 4평점 이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공저자 5평점, 제3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하고, SCI 등재 논문은 200%로 계산한다.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제12조] 기록 보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 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소아청소년 신경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신경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소아청소년 신경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각 연차별 전임의의 정원은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교육지도자수 + 1로 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 신경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신경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 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에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수련 내용	기 준
연수 교육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학술대회 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 게재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제1장 제8조 제4항 참조)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
진료내용	1.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3.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교육내용	1. 세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가. 신경계 발생 및 해부 나. 신경생리 다. 신경병리 라. 신경약리 마. 발달장애 바. 뇌전증 사. 근육질환 아. 중추신경계 감염 자. 말초신경질환 차. 신경대사질환 카. 자가면역질환 타. 주산기 신경질환

수련 내용	기준
교육내용	파. 퇴행성질환 하. 기타 신경관련질환 2. 세부 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 가. 뇌파 나. 뇌영상검사 다. 뇌유발전위검사 라. 근전도 마. 신경전도검사 바. 안저검사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가. 신경진찰 나. 발달검사 다. 요추천자 라. 경막하천자 마. 근육 및 신경 생검 5. 인성교육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상황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소아청소년 신경 전임의는 수련 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동시에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인정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은 3차 의료기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 1명 이상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 ②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인정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a)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 b)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 c) 연구소 근무
 - d) 해외연수
 - e)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3.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4.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한 자.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5.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

- a.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 b.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 c.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 신경 전문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 당일 대한소아신경학회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1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다.
- ②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와의 상호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동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출제, 선택 및 교정

- ①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채점

채점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9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건의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 한다.

[제11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규정을 따른다.

[제12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신경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5.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에 제출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 ②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③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제2장)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1장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업무 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소위원회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 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한소아신경학회는 회비와 특별경

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 행정요원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행정요원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1.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5. 소아신경	5.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이하 소아신경 명칭은 모두 소아청소년 신경 으로 변경(학회명 제외)
2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1.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1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2	제 2 조 (정의) “소아신경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아신경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	[제2조] 정의 “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소아청소년 신경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	
3	제 3 조 (의의)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신경학에 대한	[제3조] 의의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로서 소아청소년 신경학 에 대한	분과관리위원회를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로 일괄 명기
4	제 4 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 학술, 교육수련위원장 등 당연직 3명	[제4조] 조직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p>과 일반 위원 4명이 위원이 된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p> <p>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p> <p>③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p> <p>④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p>	
		<p>[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p> <p>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을 매년 10명씩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제2장 참조)</p>	
5	<p>제 5 조 (수련)</p> <p>1)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신경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2) 전임의의 정원, 수련기간,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6조] 수련</p> <p>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 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p> <p>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p> <p>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p> <p>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p>한다.</p> <p>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전임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참조)</p>	
6	<p>[제6조] 수련병원</p> <p>1)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신경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2)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추천한다.</p> <p>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제7조] 수련병원</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 신경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추천한다.</p> <p>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참조)</p>	
7	<p>제 7 조 (자격인정)</p> <p>1) 자격인정 방법</p> <p>(1) 자격인정 신청자는 소정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p> <p>(2) 세부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p> <p>(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2) 자격인정 기준</p> <p>(1) 세부전문 의 자격은 ①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본 학회가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받거나 1년 이상 수련을 하고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논문 인정학술지(별표 2)에 제 1차자로 원저를 총 1편 이상 발표한 자의 조건을 만족</p>	<p>[제8조] 자격인정</p> <p>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 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인정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된 세부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시키며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p> <p>(2) 2년 이상 소아과 전문의로 의료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연수교육을 120시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인정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p> <p>(3)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2005년 3월 1일 현재 4년 이상 소아신경학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 참여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p> <p>(4)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1985년 이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소아신경학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창립 및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는 자격인정 시험을 면제하고 소정의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학병원에서 소아신경을 전공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책을 수행 중인 교육 지도자는 자격인정 시험을 면제하고 소정의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a)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b)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c) 연구소 근무 d) 해외연수 e)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 아야 한다.</p> <p>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 안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 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 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 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 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p> <p>3.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 내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 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 (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p> <table border="1" data-bbox="676 878 1079 1419"> <thead> <tr> <th>인정학회</th> <th>관련학회</th> </tr> </thead> <tbody> <tr> <td>대한소아신경학회</td> <td></td> </tr> <tr> <td>대한소아과학회</td> <td></td> </tr> <tr> <td>대한뇌전증학회</td> <td>명기된 학회</td> </tr> <tr> <td>대한두통학회</td> <td>이외에 소아</td> </tr> <tr> <td>대한신경과학회</td> <td>신경학과 연</td> </tr> <tr> <td>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td> <td>관이 있다고</td> </tr> <tr> <td>한국뇌신경과학회</td> <td>대한소아신</td> </tr> <tr> <td>미국소아과학회</td> <td>경학회 세부</td> </tr> <tr> <td>미국소아신경학회</td> <td>전문의 관리</td> </tr> <tr> <td>미국간질학회</td> <td>위원회에서</td> </tr> <tr> <td>국제소아신경학회</td> <td>인정하는 학</td> </tr> <tr> <td>국제간질학회</td> <td>회 및 학술</td> </tr> <tr> <td>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td> <td>대회</td> </tr> <tr> <td>유럽간질학회</td> <td></td> </tr> <tr> <td>일본소아신경학회</td> <td></td> </tr> </tbody> </table> <p>4.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 준)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 의 원저를 게재한 자.</p>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명기된 학회	대한두통학회	이외에 소아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과 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관이 있다고	한국뇌신경과학회	대한소아신	미국소아과학회	경학회 세부	미국소아신경학회	전문의 관리	미국간질학회	위원회에서	국제소아신경학회	인정하는 학	국제간질학회	회 및 학술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대회	유럽간질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p>③ 의 서류 심 사 과정 삭제</p> <p>대한소아신경학 회 인정 또는 관 련학회와 대한소 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 에 관한 표 추가</p>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명기된 학회																																		
대한두통학회	이외에 소아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과 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관이 있다고																																		
한국뇌신경과학회	대한소아신																																		
미국소아과학회	경학회 세부																																		
미국소아신경학회	전문의 관리																																		
미국간질학회	위원회에서																																		
국제소아신경학회	인정하는 학																																		
국제간질학회	회 및 학술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대회																																		
유럽간질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table border="1" data-bbox="675 182 1075 701"> <thead> <tr> <th data-bbox="675 182 918 221">인정학술지</th> <th data-bbox="918 182 1075 221">연관학술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75 221 918 701">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td> <td data-bbox="918 221 1075 701">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td> </tr> </tbody> </table> <p data-bbox="689 721 1075 1103"> 5.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 a.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b.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c.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② 해외에서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자격인정시험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참조) </p>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8	제 8 조 (시험)	[제9조] 시험					
9	제 9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연 월 일로 부터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일로 부터					
	<p data-bbox="268 1272 668 1328">1) 이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268 1338 668 1426">2) 제 7조 제 2항 제 2호의 연수교육 개시 시기 및 응시자격 제한 시기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p> <p data-bbox="268 1436 668 1524">3) 제 7조 제 2항 제 4호의 서류심사에 의한 자격 인정은 2005년 4월 15일 현재 서류심사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p>	<p data-bbox="682 1272 1082 1328">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682 1338 1082 1397">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682 1407 1082 1720">③ 경과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p>					

2.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2.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신경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 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 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 교육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를 삭제함.
3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가 감독, 주관한다.	[제3조] 주관 연수 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4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 5조 제 1항 제 1호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대한소아신경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제 5 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제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대한소아과학회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③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②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 표 추가 연수교육 인정 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인정학회</th> <th style="width: 50%;">관련학회</th> </tr> </thead> <tbody> <tr> <td>대한소아신경학회</td> <td></td> </tr> <tr> <td>대한소아과학회</td> <td></td> </tr> <tr> <td>대한뇌전증학회</td> <td>명기된 학회</td> </tr> <tr> <td>대한두통학회</td> <td>이외에 소아</td> </tr> <tr> <td>대한신경과학회</td> <td>신경학과 연</td> </tr> <tr> <td>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td> <td>관이 있다고</td> </tr> <tr> <td>한국뇌신경과학회</td> <td>대한소아신</td> </tr> <tr> <td>미국소아과학회</td> <td>경학회 세부</td> </tr> <tr> <td>미국소아신경학회</td> <td>전문의 관리</td> </tr> <tr> <td>미국간질학회</td> <td>위원회에서</td> </tr> <tr> <td>국제소아신경학회</td> <td>인정하는 학</td> </tr> <tr> <td>국제간질학회</td> <td>회 및 학술</td> </tr> <tr> <td>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td> <td>대회</td> </tr> <tr> <td>유럽간질학회</td> <td></td> </tr> <tr> <td>일본소아신경학회</td> <td></td> </tr> </tbody> </table>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명기된 학회	대한두통학회	이외에 소아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과 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관이 있다고	한국뇌신경과학회	대한소아신	미국소아과학회	경학회 세부	미국소아신경학회	전문의 관리	미국간질학회	위원회에서	국제소아신경학회	인정하는 학	국제간질학회	회 및 학술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대회	유럽간질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명기된 학회																																		
대한두통학회	이외에 소아																																		
대한신경과학회	신경학과 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관이 있다고																																		
한국뇌신경과학회	대한소아신																																		
미국소아과학회	경학회 세부																																		
미국소아신경학회	전문의 관리																																		
미국간질학회	위원회에서																																		
국제소아신경학회	인정하는 학																																		
국제간질학회	회 및 학술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대회																																		
유럽간질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6	<p>제 6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p> <p>1) 관리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 1호 및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p> <p>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한소아과학회지 및 대한소아신경학회지에 공고하며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p>	<p>[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p> <p>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 1호 및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 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승인된 연수 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 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p> <p>③ 승인된 연수 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p>	<p>계획서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설되어 시행 예정 혹은 시행한 연수강좌에 대한 인정 조항 추가</p>																																
7	<p>제 8 조 (등록 및 등록비) 교재대, 강사료</p>	<p>[제8조] 등록 및 등록비</p> <p>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 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교재대를 교재료로 변경</p>																																
8	<p>제 9 조 (실시결과 보고)</p> <p>연수강좌 및 실습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 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p>	<p>[제9조] 실시결과 보고</p> <p>연수강좌 및 실습 후 대한소아신경학회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9	제 10 조 (평점카드 교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신경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10	제 11 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교육종류</th> <th style="text-align: left;">평 점</th> </tr> </thead> <tbody> <tr> <td>1. 연수강좌</td> <td>1평점/1시간</td> </tr> <tr> <td>2. 실습</td> <td>1평점/1시간</td> </tr> <tr> <td>3. 학술대회</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인정학회</td> <td>2평점/1일</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관련학회</td> <td>1평점/1일</td> </tr> </tbody> </table> (1)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또는 등록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정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시 제 1발표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 2)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별표 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 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게는 2평점을 가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단 동일 내용을 학술대회 제 1저자로 구연 발표 및 논문 게재시는 10평점으로 한다. 3) 교육회기 동안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한 평점을 학회에서 주관하는 10평점을 포함하여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종류	평 점	1. 연수강좌	1평점/1시간	2. 실습	1평점/1시간	3. 학술대회		인정학회	2평점/1일	관련학회	1평점/1일	[제11조] 평점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연수 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제6조 제2항 참조)는 최대 1일 4평점 이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 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 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공저자 5평점, 제3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 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하고, SCI 등재 논문은 200%로 계산한다.	학술대회 평점인정 기준에 대한 제논의 결과 분과 학회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함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추가 참석 증빙에서 명찰 추가 인정
교육종류	평 점														
1. 연수강좌	1평점/1시간														
2. 실습	1평점/1시간														
3. 학술대회															
인정학회	2평점/1일														
관련학회	1평점/1일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0		인정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연관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11	제 11 조 (기록 보관)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주체 명확하게 기술
12	제 12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체 명확하게 기술
부칙	부칙 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교육은 본 규칙에 의해 실시된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3.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신경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주 체 명확하게 기술
2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신경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 소아청소년 신경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신경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 소아청소년 신경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신경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주 체 명확하게 기술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전임의 수련병원의 자격이 생성되므로 논리에 맞지 않아 변경
3	제 3 조 (수련) 소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 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 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주 체 명확하게 기술
4	제 4 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2) 수련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련기간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련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군전역자를 위한 수련기간 명시 교육지도자 부재 시의 수련인정기간 규정 추가 주체 명확화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p>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5	제 5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p>[제5조] 전임의 정원</p> <p>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각 연차별 전임의의 정원은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교육지도자수 + 1로 한다.</p> <p>②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p>							
6	<p>제 6 조 (수련과정)</p> <p>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교육 목표</p> <p>소아신경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신경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 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2)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p>	<p>[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 신경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신경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 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②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수련 내용</th> <th style="width: 70%;">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수 교육</td> <td>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술대회 참석</td> <td>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td> </tr> </tbody> </table>	수련 내용	기 준	연수 교육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학술대회 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수련 내용을 2항에 구체적으로 제시
수련 내용	기 준								
연수 교육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학술대회 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table border="1"> <tr> <th data-bbox="681 182 782 217">수련 내용</th> <th data-bbox="782 182 1078 217">기 준</th> </tr> </table>	수련 내용	기 준	
		수련 내용	기 준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 터 발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 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 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 게재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 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 정 또는 연관학술지(제1장 제8조 제4항 참조)에 제1저자로 1편 이 상의 원저를 게재		
진료내용	1.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 명 이상 3.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교육내용	1. 세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가. 신경계 발생 및 해부 나. 신경생리 다. 신경병리 라. 신경약리 마. 발달장애 바. 뇌전증 사. 근육질환 아. 중추신경계 감염 자. 말초신경질환 차. 신경대사질환 카. 자가면역질환 타. 주산기 신경질환 파. 퇴행성질환 하. 기타 신경관련질환 2. 세부 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 가. 뇌파 나. 뇌영상검사 다. 뇌유발전위검사 라. 근전도 마. 신경전도검사 바. 안저검사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 독능력 가. 신경진찰 나. 발달검사 다. 요추천자 라. 경막하천자 마. 근육 및 신경 생검 5. 인성교육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제 7 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1) 수련병원의 소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p> <p>(2)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 기록</p> <p>(3) 전임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p> <p>(4)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p> <p>2) 제 1항 제 2호와 제 4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p> <p>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p> <p>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p> <p>[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p> <p>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p> <p>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p> <p>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8	<p>제 8 조 (전임의 임용보고)</p> <p>1) 수련병원의 소아과 책임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명부</p> <p>(2)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수련 이수자 전임의 기록 카드</p> <p>(3)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수련 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교육지도자 명부</p> <p>2)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상황보고</p> <p>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p> <p>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p> <p>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p> <p>②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9	<p>제 9 조 (겸직 및 중복 수련 금지)</p> <p>1) 전임의는 수련 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동시에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p> <p>2)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p>	<p>[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p> <p>① 소아청소년 신경 전임의는 수련 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동시에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p> <p>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p>	
10	<p>제 10 조 (수련병원의 지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0	아과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인정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1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인정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④ 수련병원은 3차 의료기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 1명 이상의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새롭게 전임의 교육을 시작하려고 계획하는 경우(매해 3월부터 전임의 교육회기가 시작됨), 미리 신규 수련병원 신청을 하여 교육회기 시작 전 2월까지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전임의 수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2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소아과 책임자에게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13	제 13 조 (수련병원의 심사)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15호 서식에 의하여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신경학회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	수련병원 자격심사 및 갱신으로 수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3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에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각 분과위원회는 각 수련병원 별로 5년마다 시설 및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장에게 보고하고, 소아과 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 교부 받아야 한다.
14	제 14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인 경우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한 경우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①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②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15	제 15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칙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가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이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끝난 수련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4.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2	제 2 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인정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a)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b)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c) 연구소 근무 d) 해외연수 e)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3.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현행 규정 중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조항을 삭제함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와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관한 표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74 184 943 229">인정학회</th> <th data-bbox="943 184 1078 229">관련학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74 229 943 778">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간질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간질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간질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td> <td data-bbox="943 229 1078 778">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td> </tr> </tbody> </table>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간질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간질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간질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간질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간질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간질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p>4.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한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74 936 925 981">인정학술지</th> <th data-bbox="925 936 1078 981">연관학술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74 981 925 1460">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td> <td data-bbox="925 981 1078 1460">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td> </tr> </tbody> </table> <p>5.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p> <p>a.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p> <p>b.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p> <p>c.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4	<p>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1)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 신경 전문과목으로 한다.</p> <p>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p> <p>제 4 조 (수험절차)</p> <p>1)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2)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해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p>	<p>[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 신경 전문과목으로 한다.</p> <p>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p> <p>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p> <p>④ 1차 시험 당일 대한소아신경학회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p>	<p>제 4조 수험절차 조항은 삭제하고 4조 내용을 3조 4항으로 이관한다.</p> <p>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함(분과 자체 인정 후 진행)</p> <p>→당일 2차 시험 가능함</p>
5	<p>제 5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p> <p>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 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p>	<p>[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p> <p>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 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p>	
6	<p>제 6 조 (응시원서)</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소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p> <p>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p> <p>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 사본</p> <p>4)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p> <p>5)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p> <p>6)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과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p> <p>7)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p> <p>8)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p>	<p>[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p>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p> <p>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p> <p>③ 별지 제16호-1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p> <p>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p> <p>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p> <p>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p> <p>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p> <p>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 (혹은 재직</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증명서)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7	제 7 조 (시험위원회 선출) 1)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소아신경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 또는 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 한다. 2)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와의 상호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동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 신경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 한다. ②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와의 상호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동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대한소아신경학회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8	제 8 조 (출제, 선택 및 교정) 1)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보존과 채점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출제, 선택 및 교정 ①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 9 조 (시험문제 및 배점)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10 조 (채점) 1)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채점 채점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10	제 11 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와 대한소아과 학회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합격자 결정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0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11	제 12 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건의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건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 한다.	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한 처리규정-관리규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시험시작 시간 이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을 시험공고 안내와 수험표 하단에 명확히 기재하고, 시험시작 이후 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12		[제11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정을 따른다.	추가신설
13	제 13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칙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신경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5.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5.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2	제 2 조 (자격)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자격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 을 취득한 자로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 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갱신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 -해외체류의 성격을 규정할 것인지 토의필요 (단순체류 혹은 해외연수)
3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갱신 교부 시 수수료 징수 항목 추가
4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 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 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3)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에 제출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 한다.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②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 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 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③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제5조] 연수교육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5조 및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연수교육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제2장)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에 자격갱신을 위해 추가로 응할 수 있다. 2) 2년 이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세부사항 추가
7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상실되며, 3년 동안에 자격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세부사항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p>제 8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 보칙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2	<p>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6.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6.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신경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규정된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1장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업무 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 기능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고시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업무 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3조] 조직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 이 수행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4	제 4 조 (회의) 1)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4조] 회의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p>[제5조] 소위원회</p> <p>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신설
6		<p>[제6조] 재정</p> <p>①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한소아신경학회는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p> <p>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p>	신설
7	<p>제 5 조 (행정요원)</p> <p>1)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p> <p>2) 행정요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7조] 행정요원</p> <p>①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p> <p>② 행정요원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p>	
부칙	<p>부 칙</p> <p>이 규정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6. 신생아 분과

2005. 6. 15 제정

2011. 3. 1 개정

1. 신생아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3. 신생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8.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별표 3)	학술대회 별도 추가 평점 기준
별표 4)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5)	수련내용
별표 6)	수련병원 지정기준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신생아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신생아 세부전문의 제도는 신생아학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신생아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은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1. 학문적 측면

- 의학지식의 급격한 팽창
- 신생아학의 급속한 발전
- 의학의 세분화, 초 세분화 경향에 대한 자연적 반응

2. 의료 기술적 측면

- 진료용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발전
- 신생아 영역에서 기계사용 기술의 습득 필요성 증대

3. 질병양상의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 다생아 및 미숙아 출생의 증가

4. 국민의 의료욕구 추이의 변화

- 복지 건강사회의 지향
-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 욕구 증가

5. 현실적 측면

- 교육 병원에 근무하는 교육지도자의 대다수가 세부전공과목 해당 업무를 수행
- 소아과학회의 학술활동도 세부전공과목별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

6. 저출산 신생아의 요구 증가

2.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세부전문의”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신생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학 분야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총무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 ②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5 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학회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연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수련

- 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학회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신생아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

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신생아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신생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실무라 함은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병원에서 근무함을 뜻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시험

- ①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신생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이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신생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수련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각 교육회기에 학회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과학회
2. 대한신생아학회 및 지부학회
3.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와 별표 1의 인정학회 및 지부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관리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대한신생아학회장은 대한신생아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평점카드 교부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 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11 조] 평점

- ① 평점인정범위는 학술대회, 연수교육,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학술대회는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과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및 대한주산의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와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과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점카드 혹은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평점을 반영한다. 단, 학술대회는 제11조②항 참조.
- ④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석에 의한 평점 증빙은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 평점카드에 의한다. 단, 국제학회의 경우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 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 12 조] 기록 보관

관리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신생아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의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별표 4에 따른다.
2.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6 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신생아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신생아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에 규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용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사항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 수련을 할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 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관리위원장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5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 및 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이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실무라 함은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병원에서 근무함을 뜻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신생아 전문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수험절차

- 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5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에 관하여 시험 3개월 전에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

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6 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 7 조] 시험위원의 선출

- ①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 조] 출제, 선택 및 교정

- ①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보존과 채점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험문제 및 배점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10 조] 채점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11 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 12 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문제관리

- ① 자격시험 문제의 관리는 문제은행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관리는 관리위원장 책임 하에 소정의 보관함에 각각 다른 2개의 열쇠를 사용하되 그 중 한 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한 개는 간사가 각각 보관한다.

[제 14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5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대한신생아학회에,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1. 신생아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1조(평점) ②참조,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평점 이수내역)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4 조 제1항에 규정된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조직

-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총무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5 조] 소위원회

- ①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소아감염병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미국 소아과학회 American Pediatric Society-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APS-SPR) Federation of Asia and Oceania Perinatal Society(FAOPS) American Thoracic Surgery(ATS) Europe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ESPR) 일본신생아학회, 일본미숙아학회, 일본주산기학회, 일본소아과학회 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ASPR) 그 외,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세계 및 지역별 신생아 및 주산기 관련학회

<별표 2> 논문평점인정 학술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련)

소아과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지, 소아심장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소아감염
 SCI 혹은 SCI(E)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그 외,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지
 게재 예정 증명서 제출도 가능

<별표 3> 학술대회 별도 추가 평점 기준

(학술 및 연구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1조 제 2항 관련)

학술대회명	추가 평점	총 평점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	4
대한신생아학회 춘계학술대회	2	4
추계학술대회	2	4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	4

<별표 4> 전임의 정원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기준
신생아	전임의의 총 정원은 교육지도자당 2명으로 한다. (단, 총 정원이라 함은 1, 2년차를 모두 합한 정원을 말한다.)

<별표 5> 수련 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10평점 이상 (학술대회 참석평점 제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기간* 중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기간* 중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2 참조)에 신생아학 관련 논문을 제1저자로 원저 1편 이상 게재 혹은 게재 예정 증명서
수련기간 중 총 진료 수	(1) 수련기간* 중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2) 수련기간* 중 외래환자 추적진료 20명 이상 (3) 수련기간* 중 타과와의 진료상담 10건 이상 (4) 수련기간* 중 VLBWI 진료건수는 20건 이상
교육내용	(1) 신생아과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신생아과 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가. 신생아 소생술 나. 인공호흡기 조작 다. 흉막천자 및 흉관 삽관술 라. 기관 삽관술 마. 계면활성제 기관내 투여 바. 비-위관, 구-위관 삽관 사. 신생아집중감시장치 조작 아. 제대혈관도관술 자. 뇌초음파 판독 차.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촬영 사진 판독 카. 광선치료 파. 발달검사 (4) 인성교육
학술회의	수련기간*중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연 2회 이상 참석

*수련기간이란 대한신생아학회로부터 승인된 지정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말함

<별표 6> 수련병원지정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 (2) 병상수 : 3차 기관 혹은 신생아학회가 인정하는 2차 기관
- (3) 신생아집중치료실 시설 및 장비 : 인공환기기, 보육기
- (4) 검사시설 : 24시간 가동 중인 기구 비치 : 혈액가스분석, 혈당측정기,
흉부 방사선 촬영기(CXR), 초음파
- (5) 연관된 타과(전문의)의 존재여부 : 흉부외과, 외과, 소아심장(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
- (6) 연간 VLBWI 입원환자수 20명 이상, 신고 병상수 10개 이상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2.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p>제 2 조 (정의)</p> <p>세부전문의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신생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p>	<p>[제2조] 정의</p> <p>“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신생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p>	이하 소아과 명칭은 모두 소아청소년과 로 변경(학회 명 제외)
3	<p>제 3 조 (의의)</p> <p>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학 분야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p>	<p>[제3조] 의의</p> <p>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학 분야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p>	
5	<p>제 5 조 (학술 및 연수교육)</p> <p>①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학회는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p>	<p>[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p> <p>①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학회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연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p>	학술대회를 포함 10평점으로 확대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해야함을 규정
6	<p>제 6 조 (수련)</p> <p>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학회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신생아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②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p> <p>③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6조] 수련</p> <p>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학회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신생아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부턴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p>	군대 및 공중보건의 전역자에 관한 조항 추가.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지침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p>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⑤ 전임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7	<p>제 7조 (수련병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신생아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 학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p>[제7조] 수련병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신생아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 학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신생아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수련병원의 인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8	<p>제 8 조 (자격인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수험 자격을 부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시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진 자. 2. 대한신생아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p>[제8조] 자격인정</p> <p>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p>자격인정 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최소 수련기간을 1년으로, 최소 취득평점을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추가 여부는 분과학회에서 결정함</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p>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3. 대한 신생아학회지에 제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한 자</p> <p>② 제1항의 수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회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인정료를 정수한다.</p> <p>③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2005년 월 일 현재 7년 이상 신생아학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활동, 참여한 경우에는 자격인정 시험을 면제하고 소정의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실무라 함은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병원에서 근무함을 뜻한다).</p> <p>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평점취득의 의무 사항 및 첫 1년간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 보강</p> <p>해외 수련시 자격 인정 규정을 추가</p>
9	<p>제 9 조 (시험)</p> <p>①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9조] 시험</p> <p>①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부칙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p>	<p>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p>

3. 신생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신생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3. 신생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 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신생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신생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수련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 한다.	
4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각 교육회기에 학회는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을 10명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각 교육회기에 학회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명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대회를 포함
5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학회 및 지부학회 2.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과학회 2. 대한신생아학회 및 지부학회 3.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6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와 별표 1의 인정학회 및 지부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와 별표 1의 인정학회 및 지부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연수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하는 규정
7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관리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관리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설되어 시행 예정 혹은 시행한 연수강좌에 대한 인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지 및 대한신생아학회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별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p>	<p>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p> <p>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대한신생아학회장은 대한신생아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여야 한다.</p>	조항 추가
	<p>제 9 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 4, 제 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9 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평점카드 교부) 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 6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p>	<p>[제 10 조] 평점카드 교부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 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p>	
11	<p>제 11 조 (평점)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p> <p>①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p> <p>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또는 등록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③ 인정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시 제 1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평점을 가산한다.</p> <p>④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별표 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중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⑤ 교육 회기 동안 연수교육을 통한 평점을 학회에서 주관하는 10평점을 포함하여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p>	<p>[제11조] 평점</p> <p>① 평점인정범위는 학술대회, 연수교육,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p> <p>② 학술대회는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과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및 대한주산의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와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과학회에서 발행한 연수 평점카드 혹은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평점을 반영한다. 단, 학술대회는 제11조 ②항 참조.</p> <p>④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석에 의한 평점 증빙은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 평점카드에 의한다. 단, 국제학회의 경우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p>	<p>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의 범위 확대</p> <p>학술대회 평점인정기준에 대한 재논의 결과 분과학회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함</p> <p>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KMA교육센터 발행 확인서)</p> <p>제1저자의 평점부여를 상향 조정함</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1		<p>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 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p> <p>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 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13	<p>제13조(보칙)</p> <p>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세부전문문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 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p>	
부칙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4.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4.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 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신생아 분과 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전임의 수련병원의 자격이 생성되므로 전임의 수련병원을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수정함
3	제 3 조 (수련) 소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4	제 4 조 (수련기간) ①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련기간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 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	군전역자를 위한 수련기간 명시 교육지도자 부재 시의 수련인정 기준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p>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5	<p>제 5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p>	<p>[제5조] 전임의 정원</p> <p>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별표 4에 따른다.</p> <p>2.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p>	
6	<p>제 6 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신생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신생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에 보건의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②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p>	<p>[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p> <p>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신생아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신생아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의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② 수련내용은 별표 5와 같다.</p>	
7	<p>제 8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p> <p>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에 규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용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p> <p>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 할 수 있다.</p>	<p>[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p> <p>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에 규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용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p> <p>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 할 수 있다.</p>	<p>대한소아과 학회 개정안 참조. 제 8조->제 7조, 제 7조->제 8조로 수정 개정</p>
8	<p>제 7 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①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전임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p> <p>②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서류는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8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p> <p>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9	<p>제 9 조 (전임의 임용보고)</p> <p>①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수련</p>	<p>[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p> <p>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p>	<p>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로 수정</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이수자 전임의 기록카드</p> <p>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교육지도자 명부</p> <p>②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사항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의 명부</p> <p>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p> <p>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p> <p>②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사항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1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추천하며, 이에 따라 대한소아과학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를 삭제하고 [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의 ②항으로 이동하여 자세히 기술</p>
11	<p>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 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 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수련병원 인정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1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12	제 13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13	제 14조 (수련병원의 심사)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련병원 자격심사 및 갱신으로 수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각 분과위원회는 5년마다 각 수련병원 별로 시설 및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아과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 교부 받아야 한다.
16	제 16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5.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 및 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1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p>제 2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로 한다.</p>	<p>[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실무라 함은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병원에서 근무함을 뜻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현행 규정 중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조항을 삭제함 2006년 이전에 전임의를 이수한 자로서 이후 한시적 경과규정으로 시행된 서류심사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전임의 이수자 중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지 않은 자는 세부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평점의무를 이동하여 응시자격에 추가함 해외수련 전임의의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 추가</p>
3	<p>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시험 과목은 신생아 전문과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시험 과목은 신생아 전문과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p>제 6조 (응시원서)</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생아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3.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사본 4.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6.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신생아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제출 : 인성포함) 7. 신생아 실무 경력증명서 8.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명합판) 	<p>[제6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p> <p>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합판) 	구비서류 목록에 응시원서 추가
7	<p>제 7조 (시험위원회 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 또는 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p>[제7조] 시험위원회 선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문제 출제, 선택, 채점, 감독, 실기 시험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며, 선택위원과 감독위원은 중복이 가능하나, 감독위원과 채점위원은 겸임하여 선출할 수 없다.
12	<p>제 12조 (부정행위자의 제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제12조] 부정행위자의 제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한 처리 규정-관리규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시험시작 시간 이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을 시험공고 안내와 수험표 하단에 명확히 기재하고, 지각한 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4		<p>[제14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p> <p>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p> <p>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른다.</p>	추가신설
15	<p>제 14조 (보칙)</p> <p>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5조] (보칙)</p> <p>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과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부칙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6.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	6.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자격)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 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자격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
3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갱신 교부 시 수수료 징수 항목 추가
4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7월말까지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 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대한신생아학회에,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1. 신생아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 명서(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1조(평점) ②참조,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평점 이수내역)	
6	<p>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p>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p>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7	<p>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8	<p>제 8 조 (보칙)</p> <p>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 보칙</p> <p>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부칙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7.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7.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2	제 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고시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시 기능 추가
3	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대한신생아학회 수련교육위원장이 되고,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총무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3조] 조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 총무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4	제 4 조 (회의)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의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소아감염병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미국 소아과학회 American Pediatric Society-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APS-SPR) Federation of Asia and Oceania Perinatal Society (FAOPS) American Thoracic Surgery (ATS) Europe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ESPR) 일본신생아학회, 일본미숙아학회, 일본주산기학회, 일본소아과학회 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ASPR) 그 외,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세계 및 지역별 신생아 및 주산기 관련학회

<별표 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학술 및 연구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1조 제 2항 관련)

소아과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지, 소아심장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소아감염

SCI 혹은 SCI(E)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그 외,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지

계재 예정 증명서 제출도 가능

<별표 3> 학술대회 별도 추가 평점 기준

(학술 및 연구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1조 제 2항 관련)

학술대회명	추가 평점	총 평점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	4
대한신생아학회 춘계학술대회	2	4
추계학술대회	2	4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	4

<별표 4> 전임의 정원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기준
신생아	전임의의 총 정원은 교육지도자당 2명으로 한다. (단, 총 정원이라 함은 1, 2년차를 모두 합한 정원을 말한다.)

<별표 5> 수련 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10평점 이상 (학술대회 참석평점 제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기간* 중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기간* 중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2 참조)에 신생아학 관련 논문을 제1저자로 원저 1편 이상 게재 혹은 게재 예정 증명서
수련기간 중 총 진료 수	(1) 수련기간*중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2) 수련기간* 중 외래환자 추적진료 20명 이상 (3) 수련기간* 중 타과와의 진료상담 10건 이상 (4) 수련기간* 중 VLBWI 진료건수는 연간 20건 이상
교육내용	(1) 신생아과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신생아과 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가. 신생아 소생술 나. 인공호흡기 조작 다. 흉막천자 및 흉관 삽관술 라. 기관 삽관술 마. 계면활성제 기관내 투여 바. 비-위관, 구-위관 삽관 사. 신생아집중감시장치 조작 아. 제대혈관도관술 자. 뇌초음파 판독 차.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촬영 사진 판독 카. 광선치료 파. 발달검사 (4) 인성교육
학술회의	수련기간*중 신생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 대회에 연 2회 이상 참석

* 수련기간이란 대한신생아학회로부터 승인된 지정 수련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는 기간을
말함

<별표 6> 수련병원지정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 (2) 병상수 : 3차 기관 혹은 신생아학회가 인정하는 2차 기관
- (3) 신생아집중치료실 시설 및 장비 : 인공환기기, 보육기
- (4) 검사시설 : 24시간 가동 중인 기구 비치 : 혈액가스분석, 혈당측정기,
흉부 방사선 촬영기(CXR), 초음파
- (5) 연관된 타과(전문의)의 존재여부 : 흉부외과, 외과, 소아심장(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안과,
이미인후과,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
- (6) 연간 VLBWI 입원환자수 20명 이상, 신고 병상수 10개 이상



7. 소아청소년 신장 분과

2005. 6. 15 제정

2011. 3. 1 개정

1.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7.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 이수 기준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장학회가 추천하며,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소아신장학 전문 분과의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소아청소년 신장 환자의 전문 진료 능력과 소아신장학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부전문가를 의미한다.

[제 3 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신장학 분야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 ①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이사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장에 의해 임명되고, 총무이사는 당연직 부위원장, 학술이사와 수련이사는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임명한다.
- ③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는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5 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학회는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한다.
- ② 평점을 위한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는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에서 시행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표 1> 에서 정한다.

[제 6 조] 수련

- 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과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 3, 4>에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교육을 위한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6> 에서 정한다.

[제 8 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 <별표 4>에서 정한다.

[제 9 조]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 ①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부 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07- 4에서 정한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시행규칙 07-5에서 정한다.

[제 11 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2.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2)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 ②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표 3> 에서 정한다.

[제 6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제 7 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신장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 10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는 1일 3평점, 대한소아신장학회는 1일 최대 4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⑦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학술지는 <별표 4도>에서 정한다.

[제 11 조] 기록 보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세분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신장분과의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 병원에서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3, 4>에서 정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교육지도자수 + 1] 로 한다.

- ② 위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련의 목표 및 내용

- ① 수련목표 : 소아청소년 신장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신장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타 분야 의료인에 대한 자문과 지도 및 소아신장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그 목표로 한다.
- ② 구체적 수련내용은 <별표 4>에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3)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겸직 및 중복수련 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서 정한다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②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5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한다.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신장학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 6 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은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채점

채점은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8 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 9 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1 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대한소아 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갱신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사정을 거쳐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해당 전월말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

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시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연수교육 혹은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시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연수교육 혹은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5 조에 규정된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구성)

- ① 위원장은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장이 임명하는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이사가 맡으며, 회무를 총괄하고,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②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학술이사와 수련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 ①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별 표 목 록

<별표 1>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5 조 2항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아뇨증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대한전해질고혈압학회 대한고혈압학회 한일소아신장학회(Korea Japan Pediatric Nephrology Seminar) 국내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수강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Asian Pacific Congress of Pediatric Nephrology (ASPN) International Pediatric Nephrology Association (IPNA)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ASN) European Dialysis and Transplantation Association (EDTA) European Society of Pediatric Nephrology (ESPN) Asian Pacific Congress of Nephrology (APCN) International Congress of Nephrology (ICN) Society of Pediatric Research (SPR) Asian Society of Pediatric Research (ASPR) World Congress of Nephrology (WCN) International Podocyte Conference	상기 명시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장학 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장학회 에서 인정한 학회

<별표 2> 논문평점 인정학술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0 조 7항 관련)

아래에 해당되는 신장 및 요로관련 잡지 게재 논문 혹은 기타 잡지에 게재된 신장 및 요로관련 논문에 한하여 평점을 인정한다. 1) 대한소아신장학회지 2)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혹은 등재 후보 국내잡지 3) SCI(Science Citation Index) 혹은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에 등재된 학술지 4)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5)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6) 기타 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 관련 /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 관련)

분과명	전임의 인정 기준
소아신장	교육지도자수 + 1

<별표 4> 수련 내용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 관련 /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교육내용	<p>(1)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장생리 ② 신장병리 ③ 급성신부전 ④ 만성신부전 ⑤ 급, 만성 사구체신염 ⑥ 신증후군 ⑦ 신세뇨관 질환 ⑧ 유전성 신질환 ⑨ 고혈압 ⑩ 요로결석 ⑪ 요로감염 ⑫ 요로계 기형 ⑬ 요로계 영상검사 ⑭ 야뇨증 및 배뇨장애 ⑮ 신대체요법(복막투석, 혈액투석, 신이식) <p>(2)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p> <p>(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능검사 ② 요검사 ③ 일반화학 및 혈청면역학적 검사 ④ 요로계 영상학 검사 ⑤ 요로계 핵의학 검사 ⑥ 신장병리검사 <p>(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대체요법 (해당분야의 실습이 가능한 병원 파견근무도 인정) ② 신생검 <p>(5) 인성교육</p>
학술회의	수련기간 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제 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를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소아신장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대한신장학회지 혹은 SCI, SCIE 등 재잡지에 신장 및 요로관련 논문으로, 제1저자로 최소한 1편 이상의 원저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수련기간 중 총 진료 수 (1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1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10건 이상

<별표 5>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 관련)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규모 :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최소 기준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규모로 기본 교육시설을 갖춘 소아과전문의 수련 기관으로 한다.
3. 기본 교육시설
 - 1) 신조직병리검사실
 - 2) 신,요로계 영상검사실
 - 3) 신대체요법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1.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소아과 명칭은 모두 소아청소년과로 변경 (학회명 제외)
2	제 2 조 (세부전문의 제도의 의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장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추천하며,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소아신장학 전문분과의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소아 신장환자의 전문 진료 능력과 소아신장학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부전문가를 의미한다.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신장학 분야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장학회가 추천하며,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세부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소아신장학 전문 분과의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소아청소년 신장 환자의 전문 진료 능력과 소아신장학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부전문가를 의미한다. [제 3 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신장학 분야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세부전문의제도의 의의를 제2조 정의와 제3조 의의로 구분함
4	제 4 조 (학술 및 연수교육)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학회는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한다. ② 평점을 위한 연수교육, 실습 및 학술대회는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시행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5 조] 학술 및 연수교육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학회는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 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한다. ② 평점을 위한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는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에서 시행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표 1>에서 정한다.	학술대회를 포함 10평점으로 확대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해야 함을 규정
5	제 5 조 (수련) 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수련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필자는 전역 일자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인정한다. ④ 전임의의 정원과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규정-01에서 정한다.	[제 6 조] 수련 ①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대 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	최소 수련기간 규정 군대 및 공중보건의 전역자에 관한 조항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p>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p> <p>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⑤ 전임의의 정원과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 3, 4>에서 정한다.</p>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지침규정
6	<p>제 6 조 (수련병원)</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교육을 위한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전문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제 7 조] 수련병원</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교육을 위한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다.</p>	수련병원의 인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7	<p>제 7 조 (세부전문 자격기준)</p> <p>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p> <p>①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학회에서 연속 2년 이상의 정</p>	<p>[제 8 조] 자격인정</p> <p>세부전문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p>	<p>자격인정 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최소 수련기간을 1년으로, 최소 취득평점을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추가</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p> <p>②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았거나, 1년 이상의 수련 후 소아신장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②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 <별표 4>에서 정한다.</p>	<p>여부는 분과학회에서 결정함</p> <p>평점취득의 의무 사항 및 첫 1년간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 보장</p> <p>해외 수련시 자격인정 규정을 추가</p>
부칙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③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p>	<p>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① ②항만 추가</p>

2.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2.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4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한다. ② 교육회기에 하기 제5조 제 1항의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각 분과학회는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필수적으로 시행할 10평점의 연수교육에 학술대회를 포함시킴
5	제 5 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 및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규정-03에서 정한다.	[제 5 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표 3>에서 정한다.	연수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하는 규정
6	제 6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학회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가 대한소아과학회지에 공고하며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제 6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가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계획서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설되어 시행 예정 혹은 시행한 연수강좌에 대한 인정조항 추가 공지를 학회홈페이지에 시행함
		[제 8 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제 9 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신장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 할 수 있다.</p>												
11	<p>제 10조 (평점)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평점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292 495 658 713"> <thead> <tr> <th>교육종류</th> <th>평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연수강좌</td> <td>1시간당 1평점</td> </tr> <tr> <td>실습</td> <td>1시간당 1평점</td> </tr> <tr> <td rowspan="3">학술대회</td> <td>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td> </tr> <tr> <td>1일당 2평점</td> </tr> <tr> <td>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td> </tr> <tr> <td>1일당 1평점</td> </tr> </tbody> </table> <p>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또는 등록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시 제 1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 평점을 가산한다. ④ 논문에 의한 평점은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게 2평점을 가산한다. 증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⑤ 교육회기(2년) 동안 인정학회 및 단체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한 평점을 15 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평점 중 학회에서 주관하는 10평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학술지는 별도규정-04에서 정한다.</p>	교육종류	평점 기준	연수강좌	1시간당 1평점	실습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	<p>[제 10조] 평점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는 1일 3평점, 대한소아신장학회는 1일 최대 4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 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 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증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⑦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학술지는 <별표 4 도>에서 정한다.</p>	<p>학술대회 평점인정기준에서 분과학회 재량권 인정하여 회당6점으로 상향조정함</p> <p>국제학회 참석증빙 자료의 범위 확대</p> <p>연수교육 강의는 평점에서 제외함</p> <p>제1저자의 평점 부여를 상향 조정함</p>
교육종류	평점 기준													
연수강좌	1시간당 1평점													
실습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														

3.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3.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2	<p>제 2조 (정의)</p> <p>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p>[제 2조] 정의</p> <p>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p>교육지도자가 있어야 전임의 수련병원의 자격이 생성되므로 전임의 수련병원을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수정함</p>
4	<p>제 4조 (수련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기간은 소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p>제 4조 (수련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3, 4>에서 정한다. 	<p>최소 수련기간 규정</p> <p>군전역자를 위한 수련기간 명시</p> <p>교육지도자 부재시의 수련인정 기준 추가</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① 각 수련병원의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p>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p> <p>① 각 수련병원 해당 분과의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p>② 각 수련병원 해당 분과의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1	<p>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과책임자는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별지 서식13호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증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p>	<p>제11, 12조를 통합</p> <p>수련병원의 지정정기기준을 자세히 기술</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②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규정-05에 따른다.</p>	<p>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p> <p>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서 정한다</p>	
14	<p>제 14조 (수련병원의 심사)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 13 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수련병원 자격심사 및 갱신으로 수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각 분과위원회는 5년마다 각 수련병원 별로 시설 및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장에게 보고하고, 소아과 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 교부 받아야 한다.</p>

4. 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4.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 및 인정 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2	제 2 조 (응시자격)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 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한다.	현행 규정 중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조항을 삭제함 평점의무를 이동하여 응시자격에 추가함 해외수련 전임의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 추가
3	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과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4조 (수험절차) 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과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④ 1차 시험 당일 분과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제 4조 수험절차 조항은 삭제하고 제4조 내용을 3조 4항으로 이관 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함(분과 자체 인정 후 당일 2차 시험진행 가능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p>제 6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삭제)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 사본 4.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6.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과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7.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 8.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p>[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⑨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구비서류 목록에 응시원서 추가
7	<p>제 7조 (시험위원회 선출) ①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①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p>	문제 출제, 선택, 채점, 감독, 실기 시험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며, 선택위원과 감독위원은 중복이 가능하나, 감독위원과 채점위원은 겸임하여 선출할 수 없다.
8	<p>제 8조 (시험문제 및 배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p>		제3조에 통합
11	<p>제 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① 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p>	<p>[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① 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p>	변동 없음 지각 시험응시자에 대한 처리규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1	<p>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③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③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정-관리규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시험시작 시간 이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을 시험 공고 안내와 수험표 하단에 명확히 기재하고, 지각한 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p>
		<p>[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p> <p>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p> <p>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p>	<p>추가신설</p>

5. 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5.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2	제 2 조 (자격)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자격 ①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갱신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을 3항으로 구분함
3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사정을 거쳐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사정을 거쳐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갱신 교부 시 수수료 징수 항목 추가
4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해당 전월말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 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갱신 시기를 자격만료 해당 전월말로 규정
6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에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	①항에 세부사항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p>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로 응할 수 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시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연수교육 혹은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7	<p>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 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시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연수교육 혹은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①항에 세부사항 추가</p>

6.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6.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별도규정에 있던 조항을 규정 6.으로 이동
2	<p>제 2 조 (기능)</p> <p>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2 조 (기능)</p> <p>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시 기능 추가

7. 별표 목록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별표1	<p><별표 1>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련 시행규칙 5조 2항 관련)</p>	<p><별표 1>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5 조 2항 관련) 인정학회 목록에 추가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국내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수강좌 International Podocyte Conference 인정학회 목록 중 대한야뇨증학회를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 학회로 수정</p>	
별표2	<p><별표 2> 논문평점 인정학술지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련 시행규칙 10조6항 관련)</p> <p>1) 대한소아신장학회지 2)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국내잡지 3) SCI(Science Citation Index) 혹은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에 등재 학술지 4)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5) 기타 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학술지</p>	<p><별표 2> 논문평점 인정학술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 육에 관한 규정 제 10 조 7항 관련)</p> <p>아래에 해당되는 신장 및 요로관련 잡지 게재 논문 혹은 기타 잡지에 게재된 신장 및 요로 관련 논문에 한하여 평점을 인정한다.</p> <p>1) 대한소아신장학회지 2)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혹은 등재 후보 국 내잡지 3) SCI(Science Citation Index) 혹은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에 등재된 학술지 4)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5)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연수교육 평점을 인 정하는 인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6) 기타 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 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p>	<p>관련조항 번호 및 학술지 범위 변경됨</p>
별표3	<p><별표 3> 전임의 정원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 정에 관한 규정. 5조 4항 관련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 에 관한 시행규칙. 6조 관련</p>	<p><별표 3>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 관련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 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 관련)</p>	<p>관련조항 번호 변경됨</p>
별표4	<p><별표 4> 수련 내용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 정에 관한 규정. 5조 4항 관련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 에 관한 시행규칙. 6조 관련</p>	<p><별표 4> 수련 내용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 관련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 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 관련)</p>	<p>관련조항 번호 변경됨</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별표4	<p>연수강좌 및 실습 : 수련기간 중 매년 논문 및 연수교육을 합하여 15평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참석평점은 5평점을 넘지 못한다.</p> <p>논문제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소아신장학회지에 최소한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p> <p>수련기간 중 총 진료 수 (1)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200명 이상 (3) 타과의 진료상담 30건 이상</p> <p>수련기간 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p>	<p>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논문제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소아신장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대한신장학회지 혹은 SCI, SCIE 등재잡지에 신장 및 요로관련 논문으로, 제1저자로 최소한 1편 이상의 원저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p> <p>수련기간 중 총 진료 수(1년 수련 기준)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100명 이상 (3) 타과의 진료상담 10건 이상</p> <p>수련기간 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p>	<p>최소이수평점 변경</p> <p>필수 논문 게재 잡지 범위 확대</p>
별표5	<p><별표 5>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대상 기준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1조 2항 관련</p> <p>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5년 이상 소아신장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소아과전문의 중에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과 규정의 일환으로 자격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소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소아신장학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2) 이외 기타사항은 소아신장학회 세분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삭제	경과규정 관련 별도규정 삭제
별표6	<별표 6>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에 관한 시행규칙 12조 2항 관련	<별표 5>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 신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 관련)	관련조항 번호 변경됨



8. 소아청소년 심장 분과

2005. 6. 15 제정

2011. 3. 1 개정

1.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4.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5.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칙
6.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
7.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8.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 범위
별표 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수련 내용
별표 4)	수련병원 지정 기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제도는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 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심장학의 발전과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학문적 측면

- 의학지식의 급격한 팽창
- 소아 심장학의 급속한 발전
- 의학의 세분화

(2) 의료 기술적 측면

- 의료기기의 개발과 발전
- 소아 심장 영역에서 의료 기술의 습득 필요성 증대

(3) 질병 양상의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 출생의 감소
- 선천성 심장병의 감소
- 전염성 질환의 감소
- 후천성 심장병의 증가

(4) 국민의 의료 욕구의 변화

- 복지 건강 사회로의 지향
-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5) 현실적 측면

- 교육 병원에 근무하는 교육지도자의 대다수가 세부전공과목 해당 업무를 수행
-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의 학술 활동도 세부 전공과목 별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
- 학회 명칭을 ‘소아심장연구회’에서 ‘대한소아심장학회’로 변경

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의 수련 요건,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완료하고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의 세밀한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에 대한 고차적인 진료 및 자문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를 전공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이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는 사용될 수가 없다.

[제 4 조] 분과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아래와 같이 2개의 소아청소년 심장 분과를 인정한다.

1. 소아청소년 심장 소아청소년과 분과
2. 소아청소년 심장 흉부외과 분과

[제 5 조] 조직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의 수련, 시험 및 자격 인정, 관리 및 자격 갱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3.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학술 및 연수교육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평점 취득을 인정하는 인정 학회와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3.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수련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전임의(fellow)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전임의의 수련 기간은 소아청소년과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3.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수련 기록의 유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수련병원

1. 대한소아심장학회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와 적절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심장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3. 수련병원의 지정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자격 인정

1. 다음 제 1호 및 2호의 요건 또는 제 1호 및 3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의학회가 공동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 (1) 소아청소년과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을 신청할 당시에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및 대한소아심장학회의 회원으로서 연속해서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2)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에서 2년 이상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1년 이상 전임의 수련을 이수한 후에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 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자격 인정의 신청 및 방법
 - (1) 자격 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소아심장학회에 제출하고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수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2) 자격 인정의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자격 인정 시험

1.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격인정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 및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

1.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3. 자격 갱신을 위하여 연수 교육을 받고 연수 평점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자격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제 7조 제 2항의 전임의 수련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3. 1차 개정된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심장학회의 학술위원회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 회기 및 교육 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각 교육 회기에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교육 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심장학회
2.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3.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 (별표 1 참조)
4. 기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 범위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 (2)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참조)

[제 7 조] 연수교육의 계획 및 승인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 1호 및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 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

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연수교육 책임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 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단, 연수교육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1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 승인을 하지 않는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의 학회지 및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일정, 인정 평점 등을 공고하며, 회기별 연수교육의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제 8 조]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해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 대금, 강사료, 식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실시 결과 보고

1.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실시 후에 연수교육 책임자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 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심장학회 및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수교육 평점카드 교부

연수교육 책임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 5호 서식의 연수교육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11 조] 평점

1. 평점의 인정 범위는 연수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정한다.
2.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 당 1평점, 학술대회는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1시간 당 1평점, 인정 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1일 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1일 당 1평점을 부여한다.
3. 연수강좌의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평점카드나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또는 분과 학회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평점카드로 한다.
4. 학술대회의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평점카드나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고, 국제 학회는 참석 확인증(certificate)이나 학술대회 공식 명찰, 학술대회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5.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나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구연이나 포스터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1평점을 부여하고, 제 1 발표자 및 책임 저자는 1평점을 가산해서 부여한다.
6.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별표 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 1 저자와 책임 저자(혹은 1인 단독 저자)는 10평점, 제 2 공저자는 5평점, 제 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을 부여한다. 종설 및 증례 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부여한다.

[제 12 조] 기록의 보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실시된 교육은 이 규칙에 의해 실시된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1 차 개정된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 기간

1. 수련 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단, 군 복무(공중보건의 근무 포함),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 기간의 단축은 1년 동안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복무(공중보건의 근무 포함)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 복무를 마치는 당해 년도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3. 교육지도자의 부재 시 수련 기간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을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부재 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부재 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고, 별지 서식 16-2호의 파견 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재 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해당 병원의 소아청소년 심장학 교육지

- 도자 수에 1을 더한 것으로 정한다. (소아청소년 분과와 흉부외과 분과를 별도로 계산)
2.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정한 상기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련 목표 및 내용

1. 소아청소년 심장학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타과에 대한 자문, 의료 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최소 1년 동안의 전임의 수련 기간 동안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해서 10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인정시험 응시 직전 2년 동안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수련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본 규칙 제 5조에 의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 수련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1.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는 아래의 기록들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 기록
 - (3) 별지 제 7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담회 기록
 - (4) 전임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2. 제 1항의 제 2호 및 제 3호의 서류는 6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의 보고

1.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의 전임의 명부
 - (2)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의 전임의 기록 카드
 - (3)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이전 년도의 수련 이수자 명부
 - (4)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의 교육지도자 명부
2.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 보고를 한 후에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겸직 및 중복 수련 금지

1. 전임의는 수련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다른 분과 세부전문의를 중복해서 수련할 수 없다.
2. 군인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 12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신청서] 및 14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에 당해 년도 1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 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인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와 적절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수련병원의 인정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병원 지정 기준 상의 변동 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의 자격을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제 13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병원의 자격 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 14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의 서식대로 진료 실적, 장비 및 시설, 인력 현황, 교육지도자 수, 전임의 현황 등을 심사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련병원에 대하여 자격 심사 2개월 이내에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 15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 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 임용 보고를 하지 아닐 때.
4. 수련병원의 자격 심사 후 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6 조] 보칙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 차 개정된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 자격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제 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 자격을 획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 3 조]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

1. 자격시험의 과목은 소아청소년 심장학으로 하며, 소아청소년 분과와 흉부외과 분과의 문제를 나누어서 출제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하되 단답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함께 출제하고, 2차 시험은 실기 시험 또는 구술 시험으로 실시한다.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5.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 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일시, 장소, 과목,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제출 기한을 시험 실시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및 구비 서류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험표(별지 제 15호 서식)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대한소아심장학회 전임의 수련 증명서(및 파견수련 증명서)
4. 별지 제 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관련 증빙 서류
5. 별지 제 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6.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책임자 및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7.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8.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 실무 경력 증명서(혹은 재직 증명서)
9. 사진 3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제 6 조] 시험위원의 선출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감독, 채점, 실기 또는 구술 시험을 담당할 위원들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심장학회 이 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 방법 등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 문제의 출제, 문제의 선택, 감독 및 채점위원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 7 조]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 채점

1.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 채점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문제 출제 위원은 출제된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밀봉 날인한 후에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제 선택 위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문제를 선택 및 교정하여 선택된 문제와 모범 답안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 밀봉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4. 채점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실시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한 후에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한다.
5.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문제 출제 위원, 문제 선택 위원, 채점 위원, 감독 위원, 인쇄 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에 대하여 비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합격자의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선은 각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3.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9 조] 부정 행위자의 제재

1.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

1.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한다.
2.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을 따른다.

[제 11 조] 보칙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된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최신의 전문적 의료지식과 술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자격 갱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갱신의 대상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 동안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 평점 및 논문 평점을 100평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2. 만 65세 이후부터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는 해외 체류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한 증빙 서류를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 갱신의 방법

1. 자격 갱신은 서류 전형으로 한다.
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자격 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3.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하여 교부할 때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 조] 제출 서류

자격 갱신을 원하는 자는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의 1개월 전까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21호 서식에 의한 자격 갱신 신청서
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별지 제 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관련 증빙 서류
4. 별지 제 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 범위 및 평점 인정 기준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의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자격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자격 갱신을 신

청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자격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2년 동안 추가로 자격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 조] 자격 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 갱신의 서류 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 동안 자격 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 갱신의 재신청에서 3년 동안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8 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된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제 5조에 규정된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 및 업무 집행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업무 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 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조직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출한다.
2. 위원장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위원은 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계 등을 담당한다.

[제 4 조] 회의

1.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2차례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2.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5 조] 재정

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사무행정 요원

1.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실무 집행에 필요한 사무행정 요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행정요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된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별 표

< 별표 1 > 연수교육의 인정 범위: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6조 관련)

인정 학회	관련 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핵의학회
World Congress of Pediatric Cardiology and Cardiac Surgery	대한임상약리학회
World Congress of Cardiology	대한중환자의학회
Congress of Asia-Pacific Pediatric Cardiac Society	대한응급의학회
Asian Pacific Congress of Cardiology	
American Heart Association Scientific Meeting	* 기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Scientific Meeting	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관
European Congress of Cardiology	련 학회’로 의결된 학회 및 단
Japanese Society of Pediatric Cardiology and Cardiac Surgery	체의 학술대회.
Japanese Society for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중국 소아심장학회	
China Pediatric Intervention Cardiology Symposium	
International Kawasaki Disease Symposium	
* 기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 학회’로 의결된 학회 및 단체의 학술대회.	

< 별표 2 >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11조 관련)

인정 학술지
Korean Circulation Journal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대한고혈압학회지
한국심초음파학회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핵의학회지
대한임상약리학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대한응급의학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 기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학회와 단체의 학술지.

< 별표 3 > 전임의 수련 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관련)

수련 내용	기 준
연수강좌 및 실습	최소 1년 동안의 수련 기간 중 연간 10평점 이상 취득.
학술대회 논문 발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명시된 학술대회에서 제 1 발표자로서 1회 이상 구연 발표, 또는 2회 이상 포스터 발표.
논문 제출	수련 기간 동안 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별표 2에 명시된 학술지에 제 1 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원저 또는 증례 보고)을 게재하거나 게재 승인을 획득.
수련 기간 중 진료 환자 수	(1) 입원 환자 진료 : 50명 이상 (2) 외래 환자 진료 : 120명 이상 (3) 타과에 대한 자문 진료 : 20명 이상 (4) 비관혈적 검사(심초음파검사 포함) : 150건 이상 (*소아청소년과 분과에 해당) (5) 관혈적 검사 : 10건 이상 (*소아청소년과 분과에 해당) (6) 소아청소년 심장 수술 또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 : 20건 이상 (*흉부외과 분과에 해당)
교육 내용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 가. 심장의 생리 및 병리 나. 심부전증 다. 선천성 심장병(성인의 선천성 심장병도 포함) 라. 후천성 심장병 마. 심장 부정맥 질환 바. 고혈압 및 고지혈증 사. 가와사기병 아. 소아청소년의 기타 심장 관련 질환 (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검사 및 수술*(*흉부외과 분과에 해당) (3) 전문적인 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과 술기 가. 심장 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을 포함) 나. 단순 흉부 X선 촬영 다. 일반 화학 검사 및 혈청 면역학적 검사 라. 심장 CT 및 MRI 검사 마. 심장 핵의학적 검사 바. 심장 도자술 및 심혈관 조영술 사. 심혈관 중재적 시술 아. 심장 생검 자. 심장 수술* (*흉부외과 분과에 해당) (4) 인성 교육
학술대회 참석	수련 기간 중에 대한소아심장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를 포함하여 별표 1의 학술대회에 년 2회 이상 참석.

< 별표 4 > 수련병원 지정 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제12조 관련)

세부 학회	수련병원 지정 기준
대한소아심장학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병원 종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차 의료기관 (2)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 3. 진료 및 검사 시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수 : 동맥혈 가스검사, 단순 흉부 X선 촬영,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24시간 심전도검사, 심도자 및 심혈관 조영검사 (2) 권장 : 운동부하검사, 심장 전기생리학검사, CT, MRI, 심장 핵의학검사, 심장 수술실, 심장 중환자실. 4. 관련 타과의 유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수 :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2) 권장 : 내과, 외과, 산부인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의 기타 세부 분과(신생아 분과, 소화기영양 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혈액중양 분과, 신경 분과, 내분비 분과, 감염 분과, 신장 분과)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2.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전체	소아과 전문의, 소아 심장/심장학, 소아과 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 심장/심장학, 소아청소년과 분과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 변경.
	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5	제 5 조 (조직)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간사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 중에서 정한다.	[제 5 조] 조직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6	제 6 조 (학술 및 연수교육)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연수 강좌 및 실습 교육을 매년 10 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정 학회와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학술 및 연수교육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평점 취득을 인정하는 인정 학회와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학술대회를 포함하여 매년 10 평점 이상으로 확대.
9	제 9 조 (자격인정)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1) 소아과/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할 때 대한소아과/흉부외과학회 및 대한소아심장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대한소아과/흉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심장학 분야를 2년 이상의 수련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수련을 이수한 후 소아심장학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제 9 조] 자격 인정 1. 다음 제 1호 및 2호의 요건 또는 제 1호 및 3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자격인정시험 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의학회가 공동 명의로 자격증 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과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을 신청할 당시에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및 대한소아심장학회의 회원으로서 연속해서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에서 2년 이상 전임 의 수련을 받거나, 1년 이상 전임 의 수련을 이수한 후에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 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 로서 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자격증이 과거 3개 학회의 공동 명의로 발행됨. (3) 해외에서 전임의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도 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주기로 함. (소아과학회 공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9		인정하는 자.	
10	제 10 조 (시험)	[제 10 조] 자격 인정 시험 3.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삽입.
부칙	부 칙	[부 칙] 3. 1차 개정된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

3.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3.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3	제 3조 (주관) 연수교육은(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심장학회의 학술위원회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 하여 실시한다.	
4	제4조 (교육 회기 및 교육 시간) 2. 각 교육회기에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교육 회기 및 교육 시간 2. 각 교육 회기에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10 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에 학술대회도 포함하기로 함. (소아과학회 공통)
5	[제 5 조] 교육 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2. 대한소아심장학회 3.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인정하거나 관련된 학회, 기관 및 단체	[제 5 조] 교육 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심장학회 2.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3.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 (별표 1 참조) 4. 기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한소아심장학회를 가장 앞에 두고, 인정 학회와 관련 학회를 명확히 기술.
6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심장학회와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3) 대한소아심장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 범위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참조)	
7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 월말까지 별지 제 1 호 및 제 2 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 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 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학회지에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일정, 인정 평점 등을 공고	[제 7 조] 연수교육의 계획 및 승인 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 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뿐 아니라 대한흉부외과학회 관리위원회도 포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하며, 회기별 연수교육의 일정은 각 수련 병원에 따로 배포한다.</p>	<p>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의 학회지 및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일정, 인정 평점 등을 공고하며, 회기별 연수교육의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p>	<p>홈페이지 공고를 추가.</p>
11	<p>제11조 (평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교육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 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한다.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소아심장학회, 소아과학회, 흉부외과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1시간 당 1평점, 인정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1일 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1일 당 1평점을 부여한다. 2.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자의 명찰, 참석 확인증(certificate) 또는 등록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3. 대한소아심장학회나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 제 1발표자는 구연이나 포스터에 관계없이 1 평점을 가산한다. 4.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별표 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을 부여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2평점을 가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부여한다. 5. 교육회기 동안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한 평점을 학회에서 주관하는 10평점을 포함하여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p>[제 11 조] 평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점의 인정 범위는 연수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정한다. 2.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 당 1평점, 학술대회는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1시간 당 1평점, 인정 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1일 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1일 당 1평점을 부여한다. 3. 연수교육의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평점카드나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또는 분과 학회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평점카드로 한다. 4. 학술대회의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나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고, 국제 학회는 참석 확인증(certificate)이나 학술대회 공식 명찰, 학술대회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5.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나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구연이나 포스터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1평점을 부여하고, 제 1 발표자 및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해서 부여한다. 6.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별표 2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 1 저자와 책임저자(혹은 1인 단독 저자)는 10평점, 제 2 공저자는 5평점, 제 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을 부여한다. 종설 및 증례 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부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연수교육 참석 증빙 자료 조항 신설. 4.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의 범위 확대. 5. 학회 발표 시 평점 인정을 받는 학회를 명확히 기술. 6. 논문 평점을 조정함. (소아과학회 공통) 7. 전임의 평점 이수 의무를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의 [제6조 수련목표 및 내용]으로 이동.

4.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4.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4	<p>제 4 조 (수련기간)</p> <p>1. 수련기간은 소아과/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p> <p>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p>	<p>[제 4 조] 수련 기간</p> <p>1. 수련 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단, 군 복무(공중보건의 근무 포함),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 기간의 단축은 1년 동안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복무(공중보건의 근무 포함)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 복무를 마치는 당해 년도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p> <p>3. 교육지도자의 부재 시 수련 기간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을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1) 부재 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p> <p>(2) 부재 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고, 별지 서식 17-2호의 파견 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부재 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입의 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수련 기간의 단축이 가능한 범위 및 한계를 명시.</p> <p>2. 군 전역자를 위한 수련 기간 명시.</p> <p>3. 교육지도자 부재 시의 수련 인정 기간 규정을 추가.</p>
5	<p>제 5조 (전입의 정원)</p> <p>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입의 정원은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p> <p>2.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p>	<p>[제 5 조] 전입의 정원</p> <p>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입의 정원은 해당 병원의 소아청소년 심장학 교육지도자 수에 1을 더한 것으로 정한다. (소아청소년 분과와 흉부외과 분과를 별도로 계산)</p> <p>2.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정한 상기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별표 3. 전입의 정원 기준]을 없애고 시행 규칙에 명시.</p>
6	<p>제 6조 (수련 교육목표 및 내용)</p> <p>1. 대한소아심장학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심장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p>	<p>[제 6 조] 수련 목표 및 내용</p> <p>1. 소아청소년 심장학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타과에 대한 자문, 의료 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를</p>	<p>2. 전입의 수련기간 중에 취득해야 할 평점을 명시하고, 학술대회를 추가하며,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의 구체 조항을 추가. (소아과학회 공통)</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p>목표로 한다.</p> <p>2.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p>	<p>양성함을 목표로 한다.</p> <p>2. 최소 1년 동안의 전임의 수련 기간 동안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해서 10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인정시험 응시 직전 2년 동안 2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3. 수련 내용은 별표 3과 같다.</p>	3. 수련 내용이 별표 3으로 변경.
11	<p>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과/흉부외과 책임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며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p> <p>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책임자는 별지 제 12호 및 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에 매년 1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 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p>	수련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는 시점을 명시.
12	<p>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p> <p>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한소아과/흉부외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심장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제 12 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p> <p>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인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와 적절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3. 수련병원의 인정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병원 지정 기준 상의 변동 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의 자격을 가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p>	<p>2. 수련병원 지정 기준이 별표 4로 변경.</p> <p>3. 수련병원 인정 기간, 자동 연장 규정 및 취소 규정을 명시.</p>
14	<p>제 14조 (수련병원의 심사)</p> <p>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 14 조] 수련병원의 자격 심사 및 갱신</p> <p>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 15호의 서식대로 진료 실적, 장비 및 시설, 인력 현황, 교육지도자 수, 전임의 현황 등을 심사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는</p>	<p>[제 14 조] 수련병원의 자격 심사 및 갱신으로 수정.</p> <p>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한다는 내용을 추가.</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4		수련병원에 대하여 자격 심사 2 개월 이내에 수련병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한다.	

5.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칙	5.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칙	
3	<p>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심장 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제 4조 (수험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p>[제 3 조]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시험의 과목은 소아청소년 심장학으로 하며, 소아청소년 분과와 흉부외과 분과의 문제를 나누어서 출제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하되 단답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함께 출제하고, 2차 시험은 실기 시험 또는 구술 시험으로 실시한다.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5.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 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p>제 3조와 4조를 통합.</p> <p>5. 제 4 조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하루에 1, 2차 시험 시행을 가능하게 함.</p>
		<p>[제 10 조]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한다. 2.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을 따른다. 	<p>추가 신설</p>

6.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6.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	
2	<p>제 2조 (자격)</p> <p>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 조] 자격 갱신의 대상</p> <p>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 간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평점 및 논문평점을 100평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p> <p>2. 만 65세 이후부터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p> <p>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는 해외 체류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1호 서식에 의한 증빙 서류를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p>	
3	<p>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p> <p>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p>	<p>[제 3 조] 자격 갱신의 방법</p> <p>1. 자격 갱신은 서류 전형으로 한다.</p> <p>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 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자격 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p> <p>3.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하여 교부할 때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자격증의 갱신 교부 시에 수수료 항목을 추가. (소아과 학회 5만원+소아심장학회 @만원=총 5+@만원 예상)</p>
4	<p>제 4조 (서류제출)</p> <p>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완료되는 해 8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p> <p>2.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p> <p>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p>	<p>[제 4 조] 제출 서류</p> <p>자격 갱신을 원하는 자는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완료되는 시점의 1개월 전까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 22호 서식에 의한 자격 갱신 신청서</p> <p>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p> <p>3. 별지 제 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p> <p>4.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p>	<p>자격 갱신 시점이 3월인 사람과 9월인 사람이 있으므로, 자격이 완료되는 시점의 1 개월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p>
7	<p>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20 평점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140 평점을, 3년 이내</p>	<p>[제 7 조] 자격 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1. 자격 갱신의 서류 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 동안 자격 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신청하면 120</p>	<p>[제6조]에서의 ‘자격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격 상실’</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p>에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 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2. 자격갱신에 3년간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평점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2. 자격 갱신의 재신청에서 3년 동안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이 아닌 '자격 정지'로 변경.

7.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7.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3	<p>제 3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p>[제 3 조] 조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출한다. 2. 위원장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위원은 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계등을 담당한다. 	<p>[제 3 조] 조직으로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상세히 기술. 2.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방법을 추가. 4. '회무'를 '회계'로 변경.
5	<p>제 5조 (재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비와 특별경비의 정수와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비와 특별경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p>[제 5 조] 재정</p> <p>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회에 청구할 수 있다.</p>	

8. 별표 목록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 별표 3 > 전임의 수련 내용</p> <p>논문 제출 : 수련 개시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 참조)에 제1저자로서 원저 또는 증례 보고 1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p>	<p>< 별표 3 > 전임의 수련 내용</p> <p>논문 제출 : 수련 기간 동안 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별표 2에 명시된 학술지에 제 1 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원저 또는 증례 보고)을 게재하거나 게재 승인을 획득.</p>	<p>“수련 개시일로부터 2 년 이내”로 한정하면 사정 상 미처 논문 게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영구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수련 기간 동안 또는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로 수정하고, “~게재하거나 게재 승인을 획득”으로 변경.</p>
	<p>교육 내용 :</p> <p>(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로써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 가. 심장생리 나. 심장병리 다. 심부전 라. 선천성 심장병 마. 후천성 심장병 바. 고혈압 사. 감염성 심내막염 아. 기타 심장 관련 질환</p> <p>(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로써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수술(흉부외과)</p>	<p>교육 내용 :</p> <p>(1)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로써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 가. 심장의 생리 및 병리 나. 심부전증 다. 선천성 심장병(성인의 선천성 심장병도 포함) 라. 후천성 심장병 마. 심장 부정맥 질환 바. 고혈압 및 고지혈증 사. 가외사기병 아. 소아청소년의 기타 심장 관련 질환</p> <p>(2)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전문의로써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검사 및 수술*(*흉부외과 분과에 해당)</p>	
	<p>학술대회 :</p> <p>수련 기간 중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별표 1 참조)에 년 2회 이상 참석.</p>	<p>학술대회 참석 :</p> <p>수련 기간 중에 대한소아심장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를 포함하여 별표 1의 학술대회에 년 2회 이상 참석.</p>	



9.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2000. 9. 1 제정
2004. 8. 10 개정
2005. 4. 15 개정
2011. 3. 1 개정

1.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기타 세부전문의 관련 규정

-
- 1)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관리 규정
 - 2)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제도 경과 규정
 - 3) 기타 규정
 - 4) 별도 규정

수련내용

수련병원의 세부지정기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야의 임상 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 ③ 위원의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2. 일반직 위원: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2명 내외로 선임한다. 단, 선출된 위원은 반드시 학회 평의원이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1명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출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

- 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행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7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별도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 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로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

- 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 험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

- ①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자격증의 표방

자격증은 자격증 자체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표방할 수 없다.

[제12조] 자격 정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회수하고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 ① 자격증 표방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재평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경우.
- ③ 세부전문의의 직분을 훼손한 경우.
- ④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정규수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 ④ 기타 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의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대한소아과학회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 ③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및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실습 및 학술대회
- ② 인정학회(의학회 평점 인정 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및 지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및 지회, 천식 알레르기학회 및 지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류마치스학회, 대한중환자학회
- ③ 해외 학회
미국알레르기학회(AAAAI/ACAAI), 미국호흡기학회(ATS), 유럽소아알레르기학회, 유럽 소아호흡기학회, 유럽알레르기학회, 유럽호흡기학회, 일본소아알레르기학회, 한일알레르기심포지엄, 서태평양알레르기심포지엄, 국제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 아시아태평양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및 면역학회(APAPARI), 세계 알레르기 학회(WAO)

④ 관련학회

2항의 인정 학회 이외의 학회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학회, 연수교육 또는 실습 등은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평점 인정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학술 대회, 연수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정 카드 혹은 의학회 평점 신청 후 발행된 평점카드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5평점, 공저자인 경우는 3평점으로 계산하고,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⑦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⑧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학술 논문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학술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천식 및 알레르기, 대한의학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면역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2. 국외학술지: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가 발행하는 의학 잡지

[제12조] 기록 보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행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7-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교육지도자수 +1]로 한다.
- ② 단, 이 인원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
 1. 급, 만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 진단과 치료
 2. 중증 호흡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
 3. 면역 질환의 진단과 치료
 4. 만성 또는 중증 환자의 관리를 위한 인성 교육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

- ① 교육지도자의 자격: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로서 수련병원 지정 시점에서 최근 5년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원저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2편 이상을 발표한 자.
- ② 교육환경의 확충: 세부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전임의 및 시설과 장비 등 학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수련내용의 보관: 다음의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계획서: 학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초로 작성
 2. 수련기록지: 세부전문의로서 필요한 술기에 관한 교육내용
 3. 학술집담회 회의록: 원내외 집담회 참석과 발표내용의 기록
 4. 근무기록지: 출퇴근 및 진료업무 일지의 작성

[제11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하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을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②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6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끝난 수련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시험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2008년도 이후(2008년도 포함) 전임의 수련 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에는 전임의 수련 시작 이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원저 주저자 2편(단, 이중 1편은 AAIR의 주저자도 가능) 이상을 발표한 자.
 3. 2007년도 이전(2007년도 포함) 전임의 수련 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에는 전임의 수련 시작 이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원저 2편 이상(단, 최소한 1편은 주저자)을 발표한 자.
 4.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16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 사본
- ⑤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 ⑩ 학술 업적: 논문 및 학회 발표 목록 및 증빙 자료
- ⑪ 학회 활동: 회비완납 증명서, 업무 위원회 활동 증명서 등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시험문제의 관리

- ① 출제와 시험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 다음 위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1. 출제위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문제를 출제한다.
 2. 고시위원: 출제된 문제에서 당해 연도 문제를 선택하고, 시험감독 및 채점을 담당한다.
- ② 문제의 보관: 당해 연도 시험문제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 ③ 문제은행: 당해 연도에 출제된 문제는 시험 후 공개하며, 동시에 문제은행에 저장한다. 문제 은행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 채점

- ① 채점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고시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9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5평점, 공저자인 경우는 3평점으로 계산하고, 종설 및 증례 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② 갱신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평점 취득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 ②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 ③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④ 논문목록 및 증빙서류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 후 2년까지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분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에서 정한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 후 3년까지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분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에서 정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기타 세부전문의 관련 규정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관리규정>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제도 경과규정>

<기타 규정>

<별도 규정>

수련내용

수련병원의 세부지정기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제도의 운영을 위한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① 평의회에서 승인된 세부전문의 제도의 관리 운영
-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 ③ 위원의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각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2. 일반직 위원: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2명 내외로 선임한다. 단, 선출된 위원은 반드시 학회 평의원이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1명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출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제4조] 회의

-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소위원회

세부전문자격시험을 위해 출제소위원회와 고시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소위원회 관리는 고시이사가 담당한다.

- ① 출제소위원회: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를 담당한다.
- ② 고시소위원회: 당해 연도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감독 및 채점을 담당한다.

[제6조] 재정

- ①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 행정요원

- ①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행정요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제도 경과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상 대한소아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 대한의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의 공식적인 문서절차를 통해 이미 시행되어 온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규정이다.

제 2 조 (대상)

1. 1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창립 및 정착에 혁혁한 공헌을 해 왔으며 제도 시행 당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야에서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던 자.
2. 2군: 1980년 이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고 당시 수련병원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자
3. 3군: 1990년 이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시 수련병원에서 책임자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4. 기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형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

제 3 조 (자격인정 방법 및 추인)

1. 1군에 해당하는 자는 공적을 인정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인정한다.
2. 2군에 해당하는 자는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야의 연수 경력,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활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3. 3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야의 연수,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활동을 입증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발표, 구술시험 그리고 면접으로 전형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한다.
4. 기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형절차에 따라 합격한자

위와 같이 2000년 9월 1일 제정되고 2004년 8월 10일 개정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세부전문의에 관한 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인정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에 대한 학회의 자격 인정을 추인한다.

제 4 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인정 방법)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모학회는 대한소아과학회이므로 모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 5 조 (자격 갱신 및 기타 사항)

자격 갱신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4월 15일부터 발효되는 학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발효하며 여기에서 정한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폐기된다.

기타 규정

세부전문의제도의 추진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행규칙을 추가 작성하고, 이 사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 교육지도자의 관리규정

별도 규정

별도규정은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지만, 시행규칙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별도규정-01: 수련내용

세부전문의를 위한 수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내용: 아래의 진료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 1) 입원환자: 알레르기 호흡기계 질환 20종 이상
 - 2) 외래환자: 만성질환의 추적진료 20례 이상
 - 3) 응급환자: 응급질환 처치 20례 이상
 - 4) 중환자관리: 중환자실 관리 5례 이상
 - 5) 타과 협진: 15례 이상
2. 검사판독능력: 교육지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1) B-세포 기능검사
 - 2) T-세포 기능검사
 - 3) 특이항체검사
 - 4) 기타 면역기능검사
3. 검사 수기의 습득 및 판독능력: 교육지도자의 확인을 받은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 1) 알레르기 피부시험: 30건 이상
 - 2) 폐기능 검사: 30건 이상
 - 3) 고해상도 단층촬영; 20건 이상
 - 4) 천식유발검사: 메타콜린 및 운동 유발검사 20건 이상
 - 5) 기관지경 검사(권장사항, 평가 시 고려)
 - 6) 식품 및 약물 알레르기유발검사(권장사항, 평가 시 고려)
4. 치료 수기의 습득 및 효과판정: 교육지도자의 확인을 받은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 1) 흡입요법의 교육: 50건 이상
 - 2) 식품가감요법: 10건 이상
 - 3) 면역요법의 대상선정과 부작용에 대한 대처 능력: 3건 이상
 - 4) 기계적 환기요법: 5건 이상
 - 5) 흉막 천자 또는 생검술(권장사항 평가 시 고려)

5. 인성교육: 교육지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 1) 장기치료환자의 선정
- 2) 공인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교육

별도규정-02: 수련병원의 세부지정기준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가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중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중환자실 및 간호사
2. 면역질환의 진단을 위한 기본 및 정밀 검사가 가능한 검사실 및 기사
 - 1) B-세포 기능검사
 - 2) T-세포 기능검사
 - 3) 특이항체검사
 - 4) 기타 면역기능검사
3. 다음과 같은 검사가 가능한 알레르기 호흡기 검사실 및 인력
 - 1) 알레르기 피부시험
 - 2) 식품, 향원 및 약물 알레르기유발검사
 - 3) 폐기능 검사
 - 4) 천식유발검사: 메타콜린 및 운동 유발검사 등
 - 5) 전산화 단층촬영
 - 6) 기관지경 검사(권장 항목임)
4. 다음과 같은 기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1) 흡입요법
 - 2) 면역요법
 - 3) 기계적 환기요법
 - 4) 흉막 천자술
 - 5) 폐생검(권장 항목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1.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마련 된 규정이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세부전문의 제도의 의의) 세부전문의 제도는 이미 시작된 전임의 수련 제도를 합리적이고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우수한 세부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인정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제도이다.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인력과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 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야 의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 될 수 없다.	
3	제 3 조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의 설치)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장: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2. 위원의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 1)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2) 일반직 위원: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2명 내외로 선임한다. 단, 선출된 위원은 반드시 학회 평의원이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1명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출한다. 3.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③ 위원의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2. 일반직 위원: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2명 내외로 선임한다. 단, 선출된 위원은 반드시 학회 평의원이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1명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출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p>[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p> <p>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p>	
4	<p>제 4 조 (수련)</p> <p>1.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 소아과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2. 수련기간은 소아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p> <p>3.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필자는 전역일자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인정한다.</p> <p>4. 전임의의 정원과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p>	<p>[제6조] 수련</p> <p>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 월까지로 한다.</p> <p>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p> <p>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행한다.</p> <p>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7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5	<p>제 5 조 (수련병원)</p> <p>1.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지도자와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병원으로 한다.</p> <p>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로부터 승인</p>	<p>[제7조] 수련병원</p> <p>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p>여부를 요구 받은 관리위원회는 별도 규정에 의거 심사하고, 그 결과를 대한 소아과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며,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으로 부터 통보받는다.</p> <p>3. 수련병원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은 관리위원회에 의해 5년마다 1회 이상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받고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별도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p> <p>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6	<p>제 6 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세부전문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년 1회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은 관리위원회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단, 세부전문의제도 초기단계의 자격시험은 별도규정에 의해 진행한다.</p> <p>1.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소아과 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소아과 전문의 취득 이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원저 2편(1편은 제 1저자)이상을 발표한 자.</p> <p>2. 자격시험의 종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p> <p>3. 재평가시험: 자격증 인정기간이 지난 세부전문의는 학회가 정하는 평가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한다.</p>	<p>[제9조] 시험</p> <p>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7	<p>제 7 조 (세부전문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기간)</p> <p>1. 자격기준: 다음의 각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p> <p>1) 학회 정회원: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한 회원 2) 자격시험 합격자 3) 임상경험: 이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소아과전문의</p> <p>2. 자격인정기간</p>	<p>[제8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세부전문의의 자격 인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p>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p> <p>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8	제 8 조 (자격증의 표방) 자격증은 자격증 자체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표방할 수 없다.	[제11조] 자격증의 표방 자격증은 자격증 자체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표방할 수 없다.	
9	제 9 조 (자격정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학회는 자격증을 회수하고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1. 자격증 표방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재평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경우 3. 세부전문의의 직분을 훼손한 경우 4. 학회정회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12조] 자격 정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회수하고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① 자격증 표방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재평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경우. ③ 세부전문의의 직분을 훼손한 경우. ④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칙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정규수련은 2006년 3월부터 시작한다. 단, 기존 수련과정을 이수한 소아과전문의는 수련과정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기타 규정은 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③ 정규수련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작한다. ④ 기타 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2.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학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4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한다. 2.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9조 제 1항의 연수교육 및 실습교육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의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대한소아과학회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③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 5 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및 실습 이외에 다음의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연수교육도 인정하며 이 경우 참석하여 평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참석 확인증을 제출해야한다. 1. 의학회 평점인정 학회주관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강습회 포함): 대한소아과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지회,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류마치스학회 2. 국외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미국알레르기학회(AAAAI/ACAAI), 미국호흡기학회(ATS), 유럽소아알레르기학회, 유럽소아호흡기학회, 유럽알레르기학회, 유럽호흡기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및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실습 및 학술대회 ② 인정학회(의학회 평점 인정 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및 지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및 지회, 천식 알레르기학회 및 지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류마치스학회, 대한중환자학회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p>학회, 일본소아알레르기학회, 한일알레르기 심포지엄, 서태평양알레르기심포지엄, 국제알레르기및임상면역학회, 아시아태평양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및 면역학회(APAPARI), 세계 알레르기 학회(WAO)</p> <p>3. 평점인정이 없는 상기 학회 외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또는 workshop: 주관 단체에서 매년 12월에 관리위원회에 평점인정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p>	<p>③ 해외 학회 미국알레르기학회(AAAAI/ACAA), 미국호흡기학회(ATS), 유럽소아알레르기학회, 유럽소아호흡기학회, 유럽알레르기학회, 유럽호흡기학회, 일본소아알레르기학회, 한일알레르기심포지엄, 서태평양알레르기심포지엄, 국제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 아시아태평양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및 면역학회(APAPARI), 세계알레르기 학회(WAO)</p> <p>④ 관련학회 2항의 인정 학회 이외의 학회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학회, 연수교육 또는 실습 등은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평점 인정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p>	
6	<p>제 6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p> <p>1.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p> <p>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지에 공고하며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p>	<p>[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p> <p>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p> <p>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p>	
7	<p>제 7 조 (등록비)</p> <p>연수교육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8조] 등록 및 등록비</p> <p>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8	<p>제 8 조 (평점카드 교부)</p> <p>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p>	<p>[제9조] 실시결과 보고</p> <p>연수강좌 및 실습 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 평점카드 교부</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9	<p>제 9 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연수교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교육</th> <th style="width: 30%;">종 류</th> <th style="width: 40%;">평 점</th> </tr> </thead> <tbody> <tr> <td>1. 연수교육</td> <td>1평점/ 1시간</td> <td></td> </tr> <tr> <td>2. 실습</td> <td>1평점 / 1시간</td> <td></td> </tr> <tr> <td>3. 학술대회</td> <td></td> <td></td> </tr> <tr> <td>인정학회</td> <td>2평점 / 1일</td> <td></td> </tr> <tr> <td>관련학회</td> <td>1평점 / 1일</td> <td></td> </tr> </tbody> </table> <p>1) 학술회의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2) 인정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시 제 1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평점을 가산한다.</p> <p>2.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 공저인 경우 제 1저자는 가산점수 2평점을 더 준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3.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 논문지는 다음과 같다.</p> <p>1) 국내학술지: 소아과,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천식 및 알레르기, 대한의학협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면역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p> <p>2) 국외학술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학회가 발행하는 의학잡지</p>	교육	종 류	평 점	1. 연수교육	1평점/ 1시간		2. 실습	1평점 / 1시간		3. 학술대회			인정학회	2평점 / 1일		관련학회	1평점 / 1일		<p>[제11조] 평점</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학술 대회, 연수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p> <p>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점 카드 혹은 의학회 평점 신청 후 발행된 평점카드로 증빙할 수 있다.</p> <p>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p> <p>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5평점, 공저자인 경우는 3평점으로 계산하고,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p> <p>⑦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⑧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학술 논문지는 다음과 같다.</p> <p>1. 국내학술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천식 및 알레르기, 대한의학협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면역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p>	
교육	종 류	평 점																			
1. 연수교육	1평점/ 1시간																				
2. 실습	1평점 / 1시간																				
3. 학술대회																					
인정학회	2평점 / 1일																				
관련학회	1평점 / 1일																				

조항	현행	개정	비고
9		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2. 국외학술지: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가 발행하는 의학잡지	
10	제 10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칙	3.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1	<p>제 1 조 (목적)</p> <p>본 규칙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수련 내용과 이를 수행하는 수련 병원(이하 '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자격 인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규정이다.</p>	<p>[제1조] 목적</p> <p>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 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p>제 2 조 (정의)</p> <p>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p> <p>1. "전임의"라 함은 학회가 지정한 수련 병원 에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 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전문의를 의미한다.</p> <p>2. "수련병원"이라 함은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학회로부터 전임의 수련에 적합하다고 승인 받은 의료기관을 의미한다.</p> <p>3. "교육지도자"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의를 뜻한다.</p>	<p>[제2조] 정의</p> <p>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p> <p>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p> <p>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p> <p>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을의를 말한다.</p>	
3	<p>제 3 조 (수련)</p> <p>소아과전문의로서 학회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 수련</p> <p>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p>	
4	<p>제 4 조 (수련기간)</p> <p>1. 수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p> <p>2.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필 전문의는 전역일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p>	<p>[제4조] 수련기간</p> <p>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p> <p>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p> <p>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행</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p>한다.</p> <p>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7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 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입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관한 자세 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5	<p>제 5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교육지도자수+1]로 한다. 단 이 인원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 전임의 정원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교육지도자수 +1]로 한다. ② 단, 이 인원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p>	
6	<p>제 6 조 (수련 목표 및 내용) 1. 수련목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진료를 펼치고 나아가 세부전문의의 양성과 타 분야 의료인의 지도 및 자문을 수행할 전문인을 양성함에 수련의 목표를 두고 있다. 2. 수련내용 -급, 만성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과 관리, 진단과 치료 -중증 호흡기질환의 진단과 치료 -면역질환의 진단과 치료 -만성 또는 중증 환자의 관리를 위한 인성 교육 3. 구체적 수련내용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별도규정-01)</p>	<p>[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② 수련내용 1. 급, 만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 진단과 치료 2. 중증 호흡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 3. 면역 질환의 진단과 치료 4. 만성 또는 중증 환자의 관리를 위한 인성 교육</p>	
7	<p>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p>	<p>[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①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p>	
8	<p>제 8 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임용보고) 1.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각 분과학회별로 이사</p>	<p>[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p>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연도 분과전임의 명부 2) 당해 연도 분과전임의 기록 카드 3)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4) 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p>2.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p>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p> <p>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p>②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9	<p>제 9 조 (교육지도자의 역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환경의 확충: 세부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전임의 및 시설과 장비 등 학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수련내용의 보관: 다음의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련계획서: 학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초로 작성 2) 수련기록지: 세부전문의로서 필요한 술기에 관한 교육내용 (별지 제7호) 3) 학술집담회 회의록: 원내외 집담회 참석과 발표내용의 기록 4) 근무기록지: 출퇴근 및 진료업무 일지의 작성 	<p>[제10조] 교육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p> <p>① 교육지도자의 자격: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로서 수련병원 지정 시점에서 최근 5년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지에 원저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2편 이상을 발표한 자.</p> <p>② 교육환경의 확충: 세부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전임의 및 시설과 장비 등 학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수련내용의 보관: 다음의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련계획서: 학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초로 작성 2. 수련기록지: 세부전문의로서 필요한 술기에 관한 교육내용 3. 학술집담회 회의록: 원내외 집담회 참석과 발표내용의 기록 4. 근무기록지: 출퇴근 및 진료업무 일지의 작성 	
10	<p>제 10조 (수련에 관한 금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련분야와 관련 없는 분야에 년 2개월 이상 파견 근무할 수 없다. 	<p>[제11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p> <p>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타 세부전문의 수련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11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소아과책임자는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 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고 대한 소아과학회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2	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전임의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이어야 한다. 2. 알레르기, 면역 및 호흡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세부 지정기준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별도규정-02)		
13	제 13조 (수련병원의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과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등을 감독할 수 있다.	
14	제 14조 (수련병원의 심사)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서	[제14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4	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을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제 15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②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16	제 16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보칙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1. 본 규칙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학회의 승인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인정받을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끝난 수련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4.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1	<p>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규칙이다.</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 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p>제 2 조 (응시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과전문의로서 지정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소아과 전문의 취득 이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논문 2편(1편은 원저의 제 1저자) 이상을 발표한 자. 2. 기타 학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은 자 	<p>[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항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2008년도 이후(2008년도 포함) 전입의 수련 후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시험 응시에는 전입의 수련 시작 이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원저 주저자 2편(단, 이중 1편은 AAIR의 주 저자도 가능) 이상을 발표한 자. 3. 2007년도 이전(2007년도 포함) 전입의 수련 후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시험 응시에는 전입의 수련 시작 이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원저 2편 이상(단, 최소한 1편은 주저자)을 발표한 자. 4.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 요건에 부합되는 전입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자. <p>[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p>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과목으로 한다.</p>	
	<p>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시험과목은 알레르기, 임상면역학, 호흡기학이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2.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 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 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 로 한다. 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 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 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 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 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 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공고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 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 기일 3개월 전에 대한 소아과학회 세부전 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 소아알레 르기 호흡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5	제 5 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 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 다. 1. 소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서식에 의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3. 별지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 빙 서류 사본 4. 별지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5.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관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6. 학술 업적 논문 및 학회 발표 내용 7. 학회 활동 회비완납 증명서, 학회 참 석 평점, 업무 위원회 활동 증명서 8.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야 실무경력 증명 서(필요시)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 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 원회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① 응시원서(별지 16호 서식)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③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소아청소년 알 레르기 호흡기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④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 사본 ⑤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 명서 ⑥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부 사본(원본 대조필) ⑦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 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⑧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 분야 실 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 증명서)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관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⑩ 학술 업적: 논문 및 학회 발표 목록 및 증 빙 자료 ⑪ 학회 활동: 회비완납 증명서, 업무 위원회 활동 증명서 등	

조항	현행	개정	비고
6	<p>제 6 조 (시험위원회 선출)</p> <p>1.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 학회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학회에서 정한다.</p>	<p>[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p> <p>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p>	
7	<p>제 7 조 (시험문제의 관리)</p> <p>1. 출제와 시험감독: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 다음 위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p> <p>1) 출제위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문제를 출제한다.</p> <p>2) 고시위원: 출제된 문제에서 당해 연도 문제를 선택하고, 시험감독 및 채점을 담당 한다.</p> <p>2. 문제의 보관: 당해 연도 시험문제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p> <p>3. 문제은행: 당해 연도에 출제된 문제는 시험 후 공개하며, 동시에 문제은행에 저장한다. 문제 은행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p>	<p>[제7조] 시험문제의 관리</p> <p>① 출제와 시험감독: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 다음 위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p> <p>1. 출제위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문제를 출제한다.</p> <p>2. 고시위원: 출제된 문제에서 당해 연도 문제를 선택하고, 시험감독 및 채점을 담당 한다.</p> <p>② 문제의 보관: 당해 연도 시험문제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p> <p>③ 문제은행: 당해 연도에 출제된 문제는 시험 후 공개하며, 동시에 문제은행에 저장한다. 문제 은행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p>	
8	<p>제 8 조 (시험문제 및 배점)</p> <p>1. 1차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주관식과 객관식 배점비율은 동일하게 한다.</p> <p>2.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p>		
9	<p>제 9 조 (채점)</p> <p>1. 채점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p> <p>2. 채점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대한소아과 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한다.</p>	<p>[제8조] 채점</p> <p>① 채점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고시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p>	
10	<p>제 10조 (합격자 결정)</p> <p>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 학회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p> <p>2.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p> <p>3.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p>	<p>[제9조] 합격자 결정</p> <p>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p> <p>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p>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0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 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11	제 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2	제 12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본 규칙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5.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	
1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 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자격)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5세 이상은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아 과학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자격 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관리위 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 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5평 점, 공저자인 경우는 3평점으로 계산하고, 중설 및 증례 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② 갱신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학회에서 위임 받은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 소아과학회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 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1.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인정 증서 사본 2. 별지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3. 별지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 전문의 인정증서 사본 ②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③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④ 논문목록 및 증빙서류	
5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5조 및 제 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에 자격 갱신을 위해 추가로 응할 수 있다. 2. 2년 이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2년까지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 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정한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7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최초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3년까지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 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정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p>제 8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알레르 기 호흡기 세부전문 의 관리 위원회 의결을 거 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 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부 칙 본 규칙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6.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관리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관리규정	6.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1	<p>제 1 조 (목적)</p> <p>본 규정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학회 정관 제26조에 의거 구성된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p>	<p>[제1조] 목적</p> <p>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p>제 2 조 (기능 및 업무)</p> <p>위원회는 세부전문의제도의 운영을 위한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의원회에서 승인된 세부전문의 제도의 관리 운영 2. 세부전문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업무 3. 세부전문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규정의 작성 	<p>[제2조] 기능</p> <p>관리위원회는 세부전문의제도의 운영을 위한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의원회에서 승인된 세부전문의 제도의 관리 운영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p>제 3 조 (구성)</p> <p>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위원, 간사로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출: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2)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로 한다. 유고 시에는 고시이사 그 직무를 대행 한다. 2.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로 한다. -일반직 위원: 평의원 중에서 2명 내외를 위원장이 선임한다. 2) 임기: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1명의 간사를 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p>[제3조] 조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③ 위원의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각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2. 일반직 위원: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2명 내외로 선임한다. 단, 선출된 위원은 반드시 학회 평의원이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1명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출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4	<p>제 4 조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회의: 년 2회, 6월과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p>[제4조]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p>2.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p> <p>3. 회의록: 모든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며, 회의내용을 학회에 보고한다.</p>	<p>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p>	
5	<p>제 5 조 (소위원회) 세부전문자격시험을 위해 출제소위원회와 고시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소위원회 관리는 고시이사가 담당한다.</p> <p>1. 출제소위원회: 시험문제의 관리 및 당해 연도 출제를 담당한다.</p> <p>2. 고시소위원회: 시험장의 운영 및 채점을 담당한다.</p>	<p>[제5조] 소위원회 세부전문자격시험을 위해 출제소위원회와 고시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소위원회 관리는 고시이사가 담당한다.</p> <p>① 출제소위원회: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를 담당한다.</p> <p>② 고시소위원회: 당해 연도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감독 및 채점을 담당한다.</p> <p>[제6조] 재정</p> <p>①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p> <p>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p>	
6	<p>제 6 조 (행정요원)</p> <p>1.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p> <p>2. 행정요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7조] 행정요원</p> <p>①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p> <p>② 행정요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p>	
	<p>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10.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분과

2005. 6. 15 제정
2007. 6. 16 개정
2007.10. 9 개정
2008.10. 개정
2010. 3. 1 개정
2012. 3. 1 개정

1.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내용
별표 5)	수련병원 지정 기준
별표 6)	경과규정
별표 7)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제도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을 전공하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 임상 의사를 양성하여 환자 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은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1. 학문적 측면

-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 발전에 따른 습득하여야 할 전문지식의 지속적인 증가
- 의학의 세분화, 초 세분화 경향

2. 의료 기술적 측면

- 진료용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발전
- 새로운 항암제 및 신약의 개발
- 조혈모세포이식의 급속한 발전 및 보급
-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영역에서 술기 습득 필요성 증대

3. 질병 양상의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질환의 증가
- 완치율의 향상 및 장기생존자에 대한 관심 고조

4. 국민의 의료욕구 추이의 변화

- 복지 건강 사회의 지향
-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 욕구 증가

5. 현실적 측면

- 교육 병원에 근무하는 교육지도자의 대다수가 분과 해당 업무를 수행
- 대한소아과학회의 학술활동도 분과별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

2.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이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의)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 분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소아과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3 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회장이 되고 총무, 학술이사와 이사 2인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이사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총무이사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2.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4 조 (수련)

1.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전임의의 정원, 수련기간,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지정 추천한다.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 (2) 세부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자격인정 시험에 대한 시행규칙은 따로 정한다. 자격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1) 혹은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본학회 정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수련 개시일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 7 조 (시험)

1.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조 (주관)

연수교육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주관 실시한다.

제 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 제 1호의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2. 대한소아과학회
3.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
2.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제 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관리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아과학, The Korean Journal of Hematology 및 임상소아혈액종양에 공고하며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제 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조 (평점카드 교부)

분과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10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각 분과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 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④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⑤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⑥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해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⑦ 세부전문의는 교육회기 동안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한 평점을 학회에서 주관하는 10평점을 포함하여 매년 연간 1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11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기록 보관)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3조 (부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 분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 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서식 16-1호에 해당하는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정한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6조 (수련과정)

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목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 청소년 혈액종양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에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 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1.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3) 전임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 (4)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2. 제 1항의 제 2호와 제 4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조 (전임의 임용보고)

1.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수련이수자 전임의 기록카드
 -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2.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2.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본 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본 학회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 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세부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5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응시자격)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 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과목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4. 1차 시험 당일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세부 전임의 수련증명서 및 증빙 서류 사본
4.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5.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6.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7.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임의 수련책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8.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9.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 6조 (시험위원회 선출)

1.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의 상호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동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출제, 선택 및 교정)

1.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보존과 채점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 8조 (채점)

1.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9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 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행위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건의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2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로 한다)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 간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외체류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산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제출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승인 후 자격인정증을 교부받는다.

1.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 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을 위해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2년 이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시험응시 요건으로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시험응시 요건으로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8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별 표 목 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제 2항 관계)

1.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2.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및 인정학회, 관련학회의 범위(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0조 제 2항 관계)

인정학술지

- 임상소아혈액종양
-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 The Korean Journal of Hematology
-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 대한면역학회지(Immune Network)
-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 상기 이외의 학술지는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인정학회

-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 대한소아과학회
- 대한혈액학회
-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 대한면역학회
-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 대한수혈학회
- 대한암학회
- International Society of Hematology (ISH)
- ISH-APD congress
- SIOP
- APBMT meeting
- European Society of Hematology(ESH)
-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ASH)

- EBMT
- IBMTR
- Cord Blood Meeting

관련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회를 관련학회로 한다.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교육지도자수 - 0

<별표 4> 수련내용(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제 2항 관계)

1. 연수강좌 및 실습
 - 수련기간과 실습기간 중 매년 10평점 이상(학술대회 참석평점은 5평점을 넘지 못함)
2. 학술대회, 논문발표
 -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 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3. 논문제출
 -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0조 제 2항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 참조)에 제 1저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4. 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수
 -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 (2) 외래환자 120명 이상
 - (3) 타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5. 교육내용
 - (1)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 (2)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
 -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 (5) 인성교육
6. 학술회의
 - 수련기간과 실습기간 중 매년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2조 제 2항 관계)

-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 (2) 병상수 :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및 3차 의료기관

<별표 6>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경과 규정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 분들은 경과규정의 일환으로 자격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정의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

2. 교육지도자

1) 대학병원

- (1) 정규 조교수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교육지도자
- (2) 의과대학을 정년퇴임했을 경우 명예교수, 석좌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교육지도자
- (3) 외래강사나 외래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비 대학 수련병원

- (1) 대학병원의 정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 (2) 해외수련병원에서 취득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는 교육지도자 연한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발령 받은 후 해외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외연수과정을 교육지도자 근무연한으로 인정한다.
- 3) 상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임의로 1년 이상 수련을 하고 현재 소아청소년 혈액종양의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3.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창립 및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

- 1)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창립 및 발전을 위해 헌신 여부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7>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4조 1항에 규정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산하에 다음

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며 총무, 학술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이사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총무이사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2.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3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산하 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5조 (회의)

1.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6조 (소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행정요원)

1.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2012.2.22.)

2.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p>제 5 조 (수련병원)</p> <p>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제 5 조 (수련병원)</p> <p>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전문’에서 ‘전임’으로 변경
부칙	<p>부칙</p> <p>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3.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p>	경과규정 추가

3. 소아청소년 혈액중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9	<p>제 9조 (평점카드 교부)</p> <p>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p>	<p>제 9조 (평점카드 교부)</p> <p>분과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p>	서식 번호 변경
10	<p>제 10조 (평점)</p> <p>1. 연수교육</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 학회를 포함한 각 분과가 지정하는 학술 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③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분과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점 카드 혹은 의학회 평점 신청 후 발행된 평점카드로 증빙할 수 있다.</p>	<p>제 10조 (평점)</p> <p>1. 연수교육</p> <p>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각 분과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p> <p>③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 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p>	평점 범위규정 서식 번호 변경
11	<p>제 11조 (실시결과 보고)</p> <p>연수강좌 및 실습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1조 (실시결과 보고)</p> <p>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 삭제

4.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p>제 2조 (정의)</p> <p>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 분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를 말한다.</p>	<p>제 2조 (정의)</p> <p>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 분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를 말한다.</p>	‘전문의’에서 ‘전임의’로 변경
4	<p>제 4조 (수련기간)</p> <p>3.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p> <p>(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서식 17-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4조 (수련기간)</p> <p>3.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p> <p>(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서식 16-1호에 해당하는 전임의 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서식 번호 변경
8	<p>제 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1.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p> <p>(2)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p> <p>(3) 전임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p> <p>(4)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p> <p>2. 제 1항의 제 2호와 제 4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 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p> <p>1.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p> <p>(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p> <p>(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p> <p>(3) 전임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p> <p>(4)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p> <p>2. 제 1항의 제 2호와 제 4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를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로 변경 서식 번호 변경
9	<p>제 9조 (전임의 임용보고)</p> <p>1.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p> <p>(2)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수련이수자 전임의 기록카드</p> <p>(3)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p>	<p>제 9조 (전임의 임용보고)</p> <p>1.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p> <p>(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수련이수자 전임의 기록카드</p> <p>(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p> <p>(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p>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를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로 변경 서식 번호 변경

조항	현행	개정	비고
9	2.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육지도자 명부 2.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1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하여 본 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본 학회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본 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본 학회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전문’에서 ‘전임’으로 변경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를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로 변경 서식 번호 변경 수련병원의 자동연장 기한 규정
13	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한다.	서식 번호 변경

5.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p>제 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원서(별지 제16호 서식)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세부 전임의 수련증명서 및 증빙 서류 사본 4.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 사본 5.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6.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7.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임의 수련책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p>제 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세부 전임의 수련증명서 및 증빙 서류 사본 4.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5.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6.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7.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임의 수련책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서식 번호 변경

6.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p>제 2조 (자격)</p> <p>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외 체류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산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조 (자격)</p> <p>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외 체류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산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갱신방법 보완 서식 번호 변경
4	<p>제 4조 (서류제출)</p> <p>2.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p> <p>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 명서</p>	<p>제 4조 (서류제출)</p> <p>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p> <p>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 명서</p>	서식 번호 변경
6	<p>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p>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을 위해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2. 2년 이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p> <p>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시험응시 요건으로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p>	자격갱신 규정 보완
7	<p>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p>	<p>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p> <p>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 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p>	자격갱신 규정 보완

조항	현행	개정	비고
	<p>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p>	<p>한다.</p> <p>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시험응시 요건으로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p>	

11.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서식	제 목
제1호	연수교육 실시 총괄계획서
제2호	연수교육 실시 세부계획서
제3호	연수교육 등록용지
제4호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5호	연수교육 평점카드
제6호	전임의 수련기록부
제7호	전임의 학술집회 기록
제8호	전임의 명부
제9호	전임의 기록카드
제10호	수련 이수자 명부
제11호	교육지도자 명부
제12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신청서
제13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서
제14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제15호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
제16호	전임의 수련증명서 및 파견수련증명서
제17호	연수평점 기록지
제18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19호	전임의 수련평가서
제20호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연기 사유서
제21호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신청서

_____ 년도 연수교육실시 총괄계획서

실시기관 : _____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 : _____ (인)

일시	시간 (시 - 시)	교육방법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교 육 주 제	강좌수	시간	평점
계						

연수교육 등록용지

_____ 학회

성 명	
의 사 면 허 번 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_____ 세부전문의 자격증 번호	
소속 도·시·군 병원명	

1. 참석자는 등록비와 함께 본 용지를 제출하여야 함.
2. 본 카드는 정자(인쇄체)로 기입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 5 호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연수교육평점카드</p> <p>1. 성명 _____</p> <p>2. 의사면허번호 _____</p> <p>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_____</p> <p>4. 세부전문의 자격증 번호 _____</p> <p>5. 교육종류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_____</p> <p>6. 교육일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p> <p>7. 평점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학회 회장(인)</p>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연수교육평점카드</p> <p>1. 성명 _____</p> <p>2. 의사면허번호 _____</p> <p>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_____</p> <p>4. 세부전문의 자격증 번호 _____</p> <p>5. 교육종류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_____</p> <p>6. 교육일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p> <p>7. 평점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실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학회 회장(인)</p>
---	---

전임의 수련기록부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전임의 성명 :

수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진료환자 수

	월 별 진 료 환 자 수											총환자수
입 원 환 자												
외 래 환 자												
타 과 진 료 상 담												

2. 연수강좌 및 실습

년 월 일	연 수 교 육 제 목	연 수 평 점
총 점		

별지 제 6 호-2

3. 학술대회

년 월 일	학 술 대 회 명(논문제목)	참 석	발 표

* 논문 발표시에는 학술대회명 아래에 발표 논문의 제목을 기록하고 제 1연자일 때는 발표란에 “제 1연자”로 표시하며 제 1연자가 아닐 때에는 “공동발표”로 표시한다.

별지 제 6 호-3

4. 논문제출

논 문	점 수

* 논문은 저자명, 잡지명, 권수, 면수, 발행년 순으로 표기하며 공저인 경우는 모든 공저자를 논문의 순서대로 기입하고, 본인이름 아래에 밑줄을 친다.

5. 진료수기 및 검사

진 료 수 기 및 검 사	회 수

주) 전임의 수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련 연도별로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한다.

전임의 학술집담회 기록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년월일	학술집회종류	학술집회제목	내 용	책임자	장소	시간

제 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서

병원 명 칭 :

소재 지 :

대표 자 :

분 과 :

기 간 :

위와 같이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함.

년 월 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 (인)

_____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병 원 명			
소 재 지			
소아청소년과 책임자		전 화	
지정 받고자 하는 세부 전문 분야		지정 받고자 하는 전임의 인원	

1. 신청병원의 종류

- 1) 병원의 종류 :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 기타()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여부 :
예(), 아니오()
- 3) 소아청소년과 내에서 해당 세부전문 분야가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
예(), 아니오()
- 4) 3)호에서 독립된 경우 그 형태는? ()

2. 신청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및 장비 현황

- 1) 병원의 허가 병상수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병상수 :
_____ 세부전문 분야 환자를 위한 특수병동 존재 유무 :
_____ 세부전문 분야 환자를 위한 병상수 :
- 2) _____ 세부전문 분야 교육지도자 수 :
간호인력 :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 소아심장과,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기타()
- 3) _____ 세부 전문 분야의 장비 현황 :

별지 제 14 호-2

3. 진료 실적

1) 연간 소아청소년과 전체의 외래환자 수 ()명

_____ 세부전문분야의 클리닉 존재 여부 :

연간 _____ 세부전문분야의 환자 수 ()명

2) 연간 소아청소년과 퇴원 환자수 :

_____ 세부전문 분야의 연간 퇴원 환자수 :

* 2, 3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보조자료(병원연보, 상병별 통계 등)의 첨부요.

별지 제 14 호-3

4. 교육현황

1) 현재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수를 년차별로 기재해 주십시오.

1년차 : ()명

2년차 : ()명

3년차 : ()명

4년차 : ()명

총 : ()명

5. 교육지도자

성 명	직 위	세부전문의 분야	취득 연도	세부전문의 인정번호

6. 검사시설

7. 연관된 타과의 존재 여부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

일련번호	지원 세부전문분야						사진 (반명함판)
의사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일				
성명	(한글)	(한자)	응시구분	초회 응시, 1차 면제			
이동통신			주민등록번호	-			
E-mail							
자택주소							
직장명, 주소							
직위							
학력	학위	취 득 년 월 일			수 여 대 학		
	학사						
	석사						
	박사						
인턴경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병역사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면제(미필)사유
레지던트 경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연한	소아과책임자 성명	
전임의 경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연 한	교육지도자 성명	
	정규						
	파견 이동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p>본인은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지원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험의 정지, 합격의 무효 또는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p>							

수험번호	수험표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일련번호	지원 세부전문 분과				사진 (반명함판)
의사면허 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일		
성명	(한글) (한자)		응시구분	초회 응시, 1차 면제	
주민등록 번호	-		이동통신		
			E-mail		
<p>○ 수험표는 필히 휴대하여야 함.</p> <p>○ 시험시작 시간 이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 소아과 학회 이 사 장</p>					

제 호

전임의 수련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

수련분야 : 분과

수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병원에서 소정의 전임의 과정을 수련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제 호

전임의 파견수련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

수련분야 : 분과

파견수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병원에서 소정의 전임의 과정을 파견 수련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제 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

세부전문의 분야 :

세부전문의 자격증 번호 :

연수교육 이수평점 : 연수강좌 및 실습	평점
학술대회	평점
논문	평점
총	평점

평점 취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소정의 _____ 세부전문의 연수평점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_____(해당 분과) 학회장 (인)

전임의 수련평가서

성명 : _____ 소속분과 ; _____
 수련기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병원명 : _____
 평가자 : 소아청소년과 과장 : _____ (인)
 _____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_____ (인)

항 목	평 가 등 급										내 용
	불 만 족			보 통				우 수			
전 문 지 식	1	2	3	4	5	6	7	8	9	10	질병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정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정도, 최신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및 습득정도
병 력 청 취	1	2	3	4	5	6	7	8	9	10	정확성, 완전성, 논리성, 효율성, 신뢰성
진 찰	1	2	3	4	5	6	7	8	9	10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숙련도
수기및검사	1	2	3	4	5	6	7	8	9	10	정확성, 안정성, 적절한 선택, 숙련도
판 단 능 력	1	2	3	4	5	6	7	8	9	10	각종 임상적 문제의 적절한 인지, 각종 자료 및 검사 방법의 적절한 선택 및 해석 능력, 치료방법의 적절한 선택과 수행시기의 적절성, 임상적 문제의 평가 및 진단의 정확성
타 과 상 담 능 력	1	2	3	4	5	6	7	8	9	10	타과와의 의사소통의 원활성, 시의 적절성, 적절한 시행여부
인 성	1	2	3	4	5	6	7	8	9	10	임상의로서의 적절한 윤리적 태도 및 행동
환 자 를 보 는 태 도	1	2	3	4	5	6	7	8	9	10	환자 및 환자 가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및 관계 유지
연 구 능 력	1	2	3	4	5	6	7	8	9	10	계획수립, 수행, 발표, 논문 작성 능력
교 육 능 력	1	2	3	4	5	6	7	8	9	10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시행 여부, 동료 및 후배의사에 대한 교육
비 고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연기사유서

의사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_____세부전문의 자격증 번호	
_____ 세부전문의 자격취득일 (또는 최종갱신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 기 사 유					
해외장기 체류자					
기 간	국명 및 도시명	목 적		비 고	
기 타 사유					
기 간		사 유			
<p>해외장기체류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부씩 첨부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성 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p>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신청서

일련번호		세부전문분야		세부전문의 자격취득일 (최종갱신일)				
의사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세부전문의 자격증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				
주 소								
현 직								
학 력	학위	취 득 년 월 일		수 여 대 학				
	학사							
	석사							
	박사							
인 턴 경 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병역 사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면제(미필) 사유
레 지 언 트 경 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연 한		소아청소년과 책임자 성명	
전임의 경 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연 한		교육지도자 성명	
	정규							
	파견							
	이동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본인은()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지원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서식 목록 2 (분과별 전용 서식 목록)

별지 서식	제 목
제6-2호	전임의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 내분비,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전용]
제10-2호	수련 이수자 명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제14-2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신생아 세부전문의 전용]
제14-3호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소아청소년 심장 세부전문의 전용]
제17-2호	연수평점 기록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제18-2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전임의 수련기록부

병원명 :

전임의 성명 :

수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확인자 : 소아청소년과 과장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인)

* 상기 사항은 평점카드 등 증빙서류를 통하여 분과책임자/소아과책임자가 확인한 후 원본은 보관하시고 자격시험 응시할 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수련 기간 중 1개월 이상 교육지도자나 전임의의 부재가 있었던 경우에 기술바랍니다.

교육지도자: 부재 유무, 사유(해외연수, 출산, 병가 등), 기간

전임의: 부재 유무, 사유(연수, 출산, 병가 등), 기간

	성명	부재 유무	사유	기간(개월)
교육지도자		유() 무()		- (개월)
교육지도자		유() 무()		- (개월)
교육지도자		유() 무()		- (개월)
전임의		유() 무()		- (개월)

1개월 이상 교육지도자의 부재가 있었다면 전임의의 역할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6-2호-2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 내분비,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전용]

2. 진료환자 수

전임의 1년차	월 별 진 료 환 자 수												총환자수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입 원 환 자													
외 래 환 자													
타 과 진 료 상 담													

전임의 2년차	월 별 진 료 환 자 수												총환자수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입 원 환 자													
외 래 환 자													
타 과 진 료 상 담													

별지 제 6-2호-3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 내분비,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전용]

3. 연수강좌 및 실습

년 월 일	연수강좌 및 실습 제목	장소	주관학회	평 점
총 점				

별지 제 6-2호-4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4. 소아청소년 내분비 집담회 및 연구회

1) 집담회

년 월 일	제목	장소	주체	평 점
횟수 () 평점 ()				

2) 연구회

년 월 일	제목	장소	주체	평 점
횟수 () 평점 ()				

별지 제 6-2호-5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5. 학술대회

년 월일	학술대회명	주체 기관	평점	참석	발표
	(논문제목)				

* 논문 발표시에는 학술대회명 아래에 발표 논문의 제목을 기록하고 제 1연자일 때는 발표란에 “제 1연자”로 표시하며 제 1연자가 아닐 때에는 “공동발표”로 표시한다.

6. 타과 파견 (해당 사항 없음)

수련 이수자 명부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년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실제 수련기간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수련 기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중
1개월 이상 소아청소년 내분비 교육지도자나 전임의의 부재 유무를 확인 후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성 명	부재 유무		사유 (연수, 출산, 병가, 군복무 등)	기간(개월)
		유	무		
교육 지도자					- (개월)
					- (개월)
					- (개월)
전임의					- (개월)
전임의					- (개월)
전임의					- (개월)
전임의					- (개월)
전임의					- (개월)

연수평점 기록지

제출자 성명 : (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

세부전문분야 : 세부전문의 인정증 번호(갱신시) :

증빙서류(평점인정카드와 논문 별책 1부씩)을 제시된 형태로 정리하여 같이 제출

1. 연수강좌 및 실습

연수 날짜	연수 교육 제목	장 소	주 최	평 점

별지 제 17-2호-2 연수평점 기록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2. 학술대회

연번	년 월일	학술대회명	주최 기관	평점	발표
		(발표 연구/논문 제목)			
			인정()/관련()		
			인정()/관련()		
			인정()/관련()		
			인정()/관련()		
			인정()/관련()		

별지 제 17-2호-4 연수평점 기록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4. 소아내분비 집담회 및 연구회

1) 집담회

연번	년 월 일	제목	장소	주체	평점
횟수/평점					

2) 연구회

연번	년 월 일	제목	장소	주체	평점
횟수/평점					

별지 제 17-2호-5 연수평점 기록지[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보충자료 [1. 연수강좌 및 실습 - 증빙서류]							
연수강좌/실 습 평점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연수강좌/실 습 평점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날짜		평점		날짜		평점	
제목				제목			
주관 학회		지회	아니오() 예()	주관 학회		지회	아니오() 예()

별지 제 17-2호-6 연수평점 기록지[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보충자료 [2. 학술대회 - 증빙서류]							
연수강좌/실 습 평점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연수강좌/실 습 평점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날짜		평점		날짜		평점	
제목				제목			
주관 학회		지회	아니오() 예()	주관 학회		지회	아니오() 예()

별지 제 17-2호-7 연수평점 기록지[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보충자료 [3. 논문 - 증빙서류]						
논문 앞장에 첨부해주시 바랍니다.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논문	연번호 ()	저자수		명	분류	기여
저자						
제목						
서지정보						잡지명 년도;권수(호):면수
접수일						
초록	<p>작성방법: 제출시 지워주세요</p> <p>분류는 원저, 증례, 종설</p> <p>기여는 공저자, 1저자, 교신저자</p> <p>초록(원저나 종설), 한글 또는 영문 요약(증례)을 이 cell에 적어주세요</p> <p>내용이 넘어가면 글자 크기를 10 point에서 줄여주세요</p>					
의의						
논문이 가지는 의의를 짧게 기술						

별지 제 17-2호-8 연수평점 기록지[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보충자료 [4. 집담회 및 연구회 - 증빙서류]												
집담회 평점/참석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집담회 평점/참석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날짜		평점	점			날짜		평점	점			
행사명	()년 ()차 집담회		장소				행사명	()년 ()차 집담회		장소		
주제						주제						

별지 제18-2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전용]

제 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

세부전문의 분야 :

세부전문의 인정증 번호(갱신시) :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인정증번호 :

수령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개월)

		신규 신청 시		갱신 시	평점 합계	
		전임의 (1년차)	2년째			
			전임의 () 기타실무 ()			
연수교육 이수평점	연수강좌 및 실습					평점
	학술대회					평점
	논문					평점
	집담회/연구회	/	/	/		평점
	총					평점

평점 취득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규 신청 시		갱신 시	비고
		전임의 (1년차)	2년째		
기간		전임의			
직위		전임의			
연수강좌 및 실습 (소아내분비학회, 인정학회)					
학술 대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인정/관련	/	/	/	
	구연 또는 포스터 (1저자 또는 책임)				평점 기입
논문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인정/관련 학회지				
	제 1저자 논문 갯수				
집담회/연구회					
입원/외래/의뢰 총족 20/100/10					

위 자는 소정의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 연수평점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한소아 _____ 학회장 (인)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제출일: 년 월 일

병 원 명			
소 재 지			
소아청소년과 책임자		전 화	
지정 받고자 하는 세부 전문 분야		지정 받고자 하는 전임의 인원	

1. 신청병원의 종류(당해년도)

- 1) 병원의 종류 : 대학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
기타()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여부 : 예(), 아니오()
- 3) 소아청소년과 내에서 신생아과가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 예(), 아니오()
- 4) 3)호에서 독립된 경우 그 형태는? ()

2. 신청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및 장비 현황(당해년도)

- 1) 병원의 허가 병상수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병상수 :
 신생아 세부전문 분야 환자를 위한 특수병동 존재 유무 :
 신생아 세부전문 분야 환자를 위한 병상수 :
- 2) 간호인력 :
- 3) 신생아 세부 전문 분야의 장비 현황 :
 인공환기기()대, 보육기()대, 혈액가스분석기()대,
 혈당측정기()대, 흉부 방사선 촬영기(CXR) ()대, 초음파()대
 기타

3. 진료 실적(전년도)

- 1) 연간 소아청소년과 전체의 외래환자 수 ()명
 신생아 세부전문분야의 클리닉 존재 여부 예(), 아니오()
 연간 신생아 세부전문분야의 환자 수 ()명
 연간 특수클리닉의 추적진료 환자 수 ()명
- 2) 연간 소아청소년과 퇴원 환자수 ()명
 신생아 세부전문 분야의 연간 퇴원 환자수 ()명
 연간 VLBWI 입원환자수 ()명

4. 교육현황(당해년도)

1) 현재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수를 년차별로 기재해 주십시오.

- 1년차 : ()명
- 2년차 : ()명
- 3년차 : ()명
- 4년차 : ()명
- 총 : ()명

5. 교육지도자(당해년도)

성 명	직 위	세부전문의 분야	취득 연도	세부전문의 인정번호

6. 검사시설(당해년도)

- 1) 혈액가스 분석 ()
- 2) 초음파검사 ()
- 3) 유발전위검사 ()

7. 연관된 타과의 존재 여부(당해년도)

연관된 과	존재 여부	전문의 성명
흉부외과		
외과		
소아심장(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		
기타		

- 3) 연간 소아청소년 심전도검사 건수 : ()건
- 4) 연간 소아청소년 심장초음파검사 건수 : ()건
- 5) 연간 소아청소년 진단적 심도자술 건수 : ()건
- 6) 연간 소아청소년 중재적 심혈관 시술 건수 : ()건
- 7) 연간 심장 전기생리학 검사 건수 : ()건
- 8) 연간 심폐기 사용하지 않은 소아청소년 심장 수술 건수 : ()건
- 9) 연간 심폐기 사용한 소아청소년 심장 수술 건수 : ()건

* 상기 2, 3 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보조 자료(병원 연보, 환자 통계 등) 첨부 요망.

4. 교육현황

- 1) 현재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혹은 흉부외과) 전공의 수를 년차별로 기재해 주십시오.
 - 1년차 : ()명
 - 2년차 : ()명
 - 3년차 : ()명
 - 4년차 : ()명
 - 총 : ()명

5. 교육지도자

성 명	직 위	세부전문의 분야	취득 연도	세부전문의 자격증 번호
		소아청소년 심장 소아청소년과 분과/ 흉부외과 분과		

6. 검사 장비 및 시설

- 1) 혈액 가스 분석기 ()
- 2) 심전도 검사 장비 ()
- 3) 심장 초음파검사 장비 ()
- 4) 24-시간 심전도검사 장비 ()
- 5) 운동부하 검사 장비 ()
- 6) 기립경사 검사 장비 (Tilt-table test) ()
- 7) CT 촬영 장비 ()
- 8) MRI 촬영 장비 ()
- 9) 핵의학 검사실 ()
- 10) 심도자 검사 및 심혈관 촬영실 ()
- 11) 심장 전기생리학 검사 장비 ()

7. 연관된 타과의 존재 여부

- 1) 타 진료과 :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 2) 소아청소년과의 타 세부 분과의 존재 여부 : (신생아 분과, 소화기영양 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혈액종양 분과, 신경 분과, 내분비 분과, 감염 분과, 신장 분과)